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I . 일 반 회 계

일 반 회 계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법 무 부

1. 세 입

토지대여료
51 - 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토지대여료	532	1,277	1,277	683	1,277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토지대여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457	1,059	532	506

건물대여료
51 -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건물대여료	686	602	602	642	642	40	6.6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578	661	686	762

기타관유물대여료
51 - 5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관유물 대여료	16	16	16	16	16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세입 개요

-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 대여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13	21	16	14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재산수입	382	339	339	211	339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출납 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 보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각종 국고예금계좌 이자 수입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101	144	388	618

벌금 및 과료
56 - 56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벌금 및 과료	1,137,471	1,461,803	1,461,803	1,715,763	1,715,763	253,960	17.4

1. 법적 근거

1) 검찰 벌금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

2) 출입국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
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7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4. 제74조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제7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6. 제76조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102조(통고처분)

-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법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②~④ <생략>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1,342,139	1,215,520	1,137,471	1,130,521

물수금 및 추정금

56 - 56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물수금 및 추징금	121,093	114,906	114,906	168,839	168,839	53,933	46.9

1. 법적 근거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형사소송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정)** ①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물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정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125,164	122,372	121,093	112,395

과태료
56 - 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과태료	11,121	12,167	12,167	12,167	12,167	-	-

1.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447조(재산형 등의 집행)

-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 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결정의 고지)

-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12,895	11,731	11,120	12,595

징계부과금
56 - 564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징계부과금	139	283	283	283	283	-	-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과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63	18	139	35

변상금
57 - 57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변상금	261	296	296	275	275	△21	△7.1

1. 법적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2.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56	498	261	2,153

위약금
57 - 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위약금	358	687	687	687	687	-	-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불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372	425	357	348

가산금
58 - 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산금	46	232	232	246	246	14	6.0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 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각종 경비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3	690	46	3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6,357	7,980	7,980	7,980	7,980	-	-

1. 법적 근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국측 공무상 손해배상 분담금
 -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분담금
-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훈련비 반환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1,995	2,529	6,357	11,696

면허료 및 수수료
65 - 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5,267	3,782	3,782	4,636	4,636	854	22.6

1. 법적 근거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13조(응시수수료)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의 신청)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신청 등)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세입 개요

-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수수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수수료, 각종 출입국허가증 발급 민원수수료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4,083	4,559	5,267	6,580

기타잡수입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잡수입	887	1,429	1,429	1,429	1,429	-	-

1.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9조(감정대상 및 기간)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4조(비용)

① 피감정인에 대한 급양 및 수용비, 진료비,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액 의뢰기관으로 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세입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수수료, 폐기물 및 불용품 매각대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1,131	1,067	884	1,027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 - 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	15,117	14,313	14,313	15,459	15,459	1,146	8.0

1.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1통당) : 2천원

2. 세입 개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4,069	15,579	15,119	9,617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타잡수입 (수입대체)	584	575	575	585	585	10	1.7

1.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세입 개요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 경비로 지정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수납액	564	601	584	323

2. 세 출

사 업 명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1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2,562	2,086	2,086	2,434	2,434	348	16.7

4. 사업목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 각 부처 지휘
- 헌법재판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하여 수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익법무관을 배치,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법률복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전항)
 -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44조)
 - 정부법무공단법(전항)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전항)
 - 공익법무관관리지침(법무부예규656호)
- 추진경위
 - 1951.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 및 소송사무의 적정 관리 도모
 - 1988. 9.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 1994. 1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도부터 사법시험합격자 중 병역 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법률구조 업무 및 국가소송 등에 종사
 - 2007. 12. 정부법무공단법 공포('07.12.21. 시행) 및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 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07. 5. 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7년~계속(국가송무수행), 1995년~계속(공익법무관운영)
- 사업규모 : 국가소송(접수 10,987건, 처리 4,373건)
행정소송(접수 40,073건, 처리 18,868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소송 업무 흐름도



○ 행정소송 업무 흐름도



사 업 명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배상금 지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가배상금 지급	155,369	150,000	100,000	150,000	150,000	50,000	50.0

4. 사업목적

-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단, 특별회계·국방부 소관 제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 추진경위
 - '67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한 국가배상금 및 소송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
- 사업규모 : 법원판결금(258건, 62,530백만원), 배상심의회결정금(94건, 210백만원), 소송비용
확정액(411건, 10,040백만원), 소송비용(3,327건, 5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가소송, 행정소송과 관련 있는 정부 각 부처 및 소송에서 승소한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 배상신청 또는 국가
소송 제기 → 배상결정 또는 확정판결 → 배상금 지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사 업 명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10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395	395	395	355	355	△40	△10.1-

4. 사업목적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
- 추진경위
 - 국가로펌으로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당기간 예산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다른 공단과 달리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 상당부분 적자가 발생하였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업무부담 가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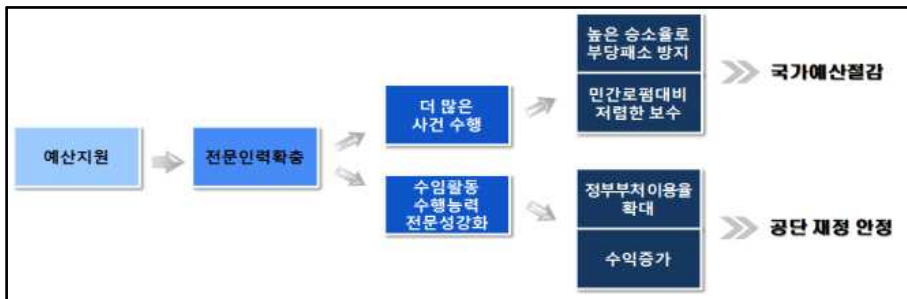
- 이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소송 등에서 국가 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2011년부터 국가가 지원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소송 1,765건, 법률자문 3,027건
-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정부법무공단
- 사업 수혜자 : 정부법무공단(궁극적 수혜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부법무공단	정액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 제1호, 제21조의2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10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0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거래 및 국제 통상법률 지원	1,055	1,205	1,203	1,022	1,022	△181	△15.0

4. 사업목적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등 국제규범의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규범의 통합을 선도하고, 성안된 국제규범의 연구 및 국내입법 반영을 통해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민·상사 법제 구축
- FTA, BIT, RCEP 등 각종 통상협상에서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실시 및 법률서비스, 지식재산권 집행, 투자 분야 협상 직접 수행과 통상법 연구, 통상 전문 학술지(‘통상 법률’) 발간을 통해 국가적 통상 역량 강화에 기여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국제투자·비즈니스가이드」 발간, 국내외 법률설명회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의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ISDS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지원
- 한편,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각국 중앙당국과의 협력 하에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법무협력 협정 체결 등 교류, 한국법센터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외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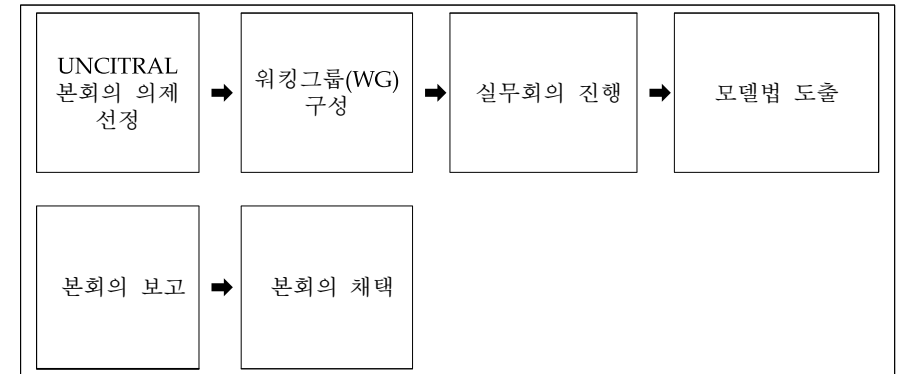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법무실) 제3항 제9호, 제9의2호, 제9의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추진경위
 - 2020. 1.~12. UNCITRAL 등 국제거래규범 성안 회의 참석(43회)
 - 2020. 1.~12.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43건)
 - 2020. 1.~12. FTA, RECP 등 총 26회의 협상 및 대책회의 참가
 - 2020. 1.~12.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누계 199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누계 29곳)
 - 2020. 1.~12.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3회(온라인) 개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자문 263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자문 사례 100선 발간
 - 2020. 1.~12. 투자담당 공무원 등 대상 국제분쟁 예방 교육 실시(3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제거래규범 성안 회의 참가('20. 43건), 통상협상 참가('20. 26건) 및 법률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자문단 243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UNCITRAL 규범 성안 절차



사 업 명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10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6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5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지원(ODA)	159	177	177	168	168	△9	△5.1

4. 사업목적

-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의 법제 및 노하우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전수요청 증가
- 법제정비 지원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은 장기적인 원조효과가 크고, 높아진 위상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필요성 증대
- 법무한류(K-Law) 사업의 주무부서로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을 위한 기본적 연구성과 축적 및 개발도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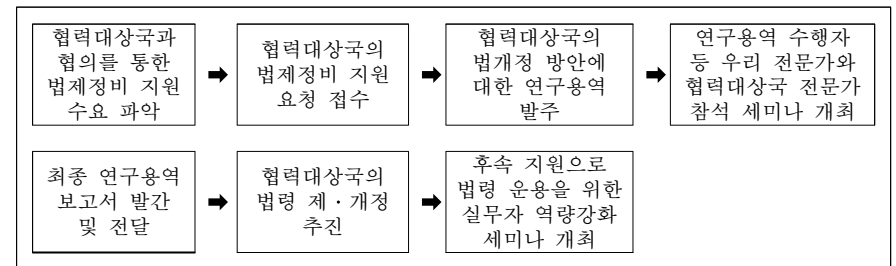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5조 제1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등), 제9조 제3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법무실) 제5항 제5호, 제9호
- 추진경위
 - 2020. 1. 몽골 형사법제 정비 지원 및 현지
 - 2020. 1~12. 캄보디아 중재, 조정법제 연구용역 실시
 - 2020. 11. 제9회 ADR컨퍼런스 스페셜 세션 개최(온라인)
 - 2020. 12. ODA 5개년 자료집 발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1~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외 현지세미나 개최('20. 1회), 국내 국제세미나 개최('20. 2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6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7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기업환경지수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업환경지수 개선	303	298	298	283	283	△15	△5.0

4. 사업목적

-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
- 투자유치 확대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기업환경 개선방향을 도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제10조, 제11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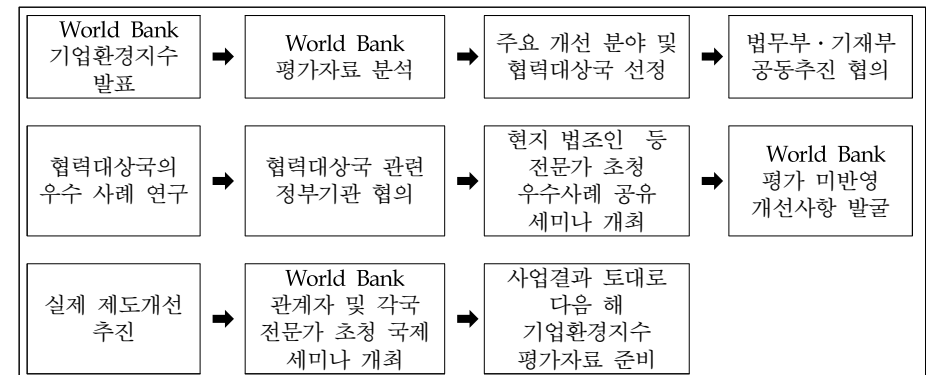
○ 추진경위

- 법무부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협력 대상국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 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협력 대상국의 기업환경개선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를 상승시켜 투자유치 확대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환경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 2019. 5.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미국 워싱턴 현지 세미나 개최
- 2019. 11. 기업환경개선 도산전문가 초청 세미나
- 2019. 11.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20. 4. 기업환경평가 대비 세계은행 화상회의 개최(3회)
- 2020. 8. 기업환경지수개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세미나(온·오프라인 병행)
- 2020. 12.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온·오프라인 병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20. 1회), 해외 현지세미나('20.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 사업 수혜자 : 우리나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1033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6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40	968	968	1,225	1,225	257	26.5

4. 사업목적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
- 국민의 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과 그 밖의 민사 법령을 선진화
- 50년 만의 민법 전면개정, 재판의 실효성 확보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법령 정비
- 기타 민원 질의·해설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법·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채권의공정환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법무자료 발간 및 도서관리)

○ 추진경위

- 2020. 2. 집합건물법 일부개정
- 2020.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20.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20. 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2020. 10. 민법 일부개정 국회 제출
- 2020. 11.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한국법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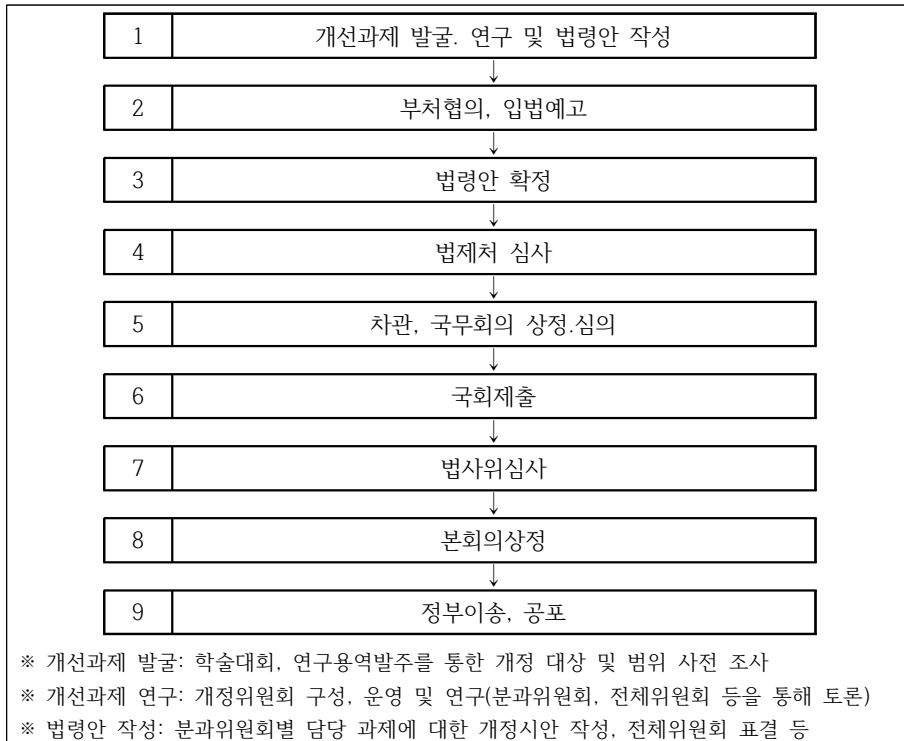
- 2018. 1. ~ 2018. 12. 민·상사 전문연구 과제 실시·결과물 산출
- 2018. 12.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대법원·법무부·한국법학원)
- 2020. 1. ~ 12. 연구과제 수행(총 6편)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민법 등 75개 법령(법률 49개, 대통령령 등 26개)에 대한 제·개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법학원	정액	한국법학원육성법 제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6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4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3,483	3,391	3,391	3,409	3,409	18	0.5

4. 사업목적

-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
-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기업규제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발굴과 상사법 분야의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등 상사 법제 분야 선진화를 위한 법제 연구 추진
- 상사법 분야의 주요 국내외 학회 및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상사법제의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이론과 실무, 글로벌 스탠더드가 조화된 선진 상사 법제 구축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 새로운 기부 방법인 공익신탁 제도 정착을 통해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 소송 외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로 사회 갈등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제도약의 발판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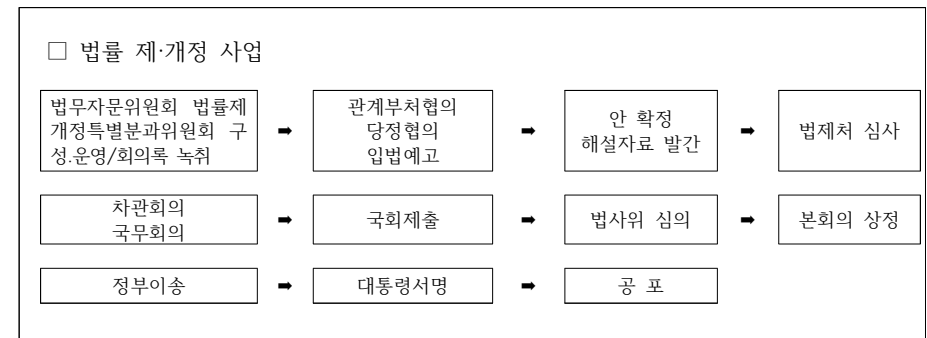
- 법령상 근거
 - 상법, 상법시행법, 상업등기법, 신탁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 추진경위
 - 2019. 9. 전자증권제도 도입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2019. 11.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20. 1.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20. 2. 감사위원회 자격요건 정비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20. 2.~6.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의
 - 2020. 6.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2020. 6.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0. 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 2020. 8. 도산 전문분야 9988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자문단 정비
 - 2020. 9.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0. 11. 2020년도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12. “신탁”을 주제로 한 선진법제포럼개최
 - 2020. 12.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및 시행
 - 2020. 12.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대한상사중재원)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대한상사중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상사중재원	정액	중재법 제40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103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6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0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712	740	740	731	731	△9	△1.2

4. 사업목적

-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선진법률서비스 인프라 구축
 - '10. 8. 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 '18. 1. 부터 화상공증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공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선진 법률문화 조성
 -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 서민 법률분쟁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선진 법률문화 조성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징계 등 공증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증인법 제78조(감독기관),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80조(서류의 검열), 제81조(이의 신청),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4조(징계기관),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의2(징계협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제85조의3(제척 사유), 제85조의4(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공증인법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 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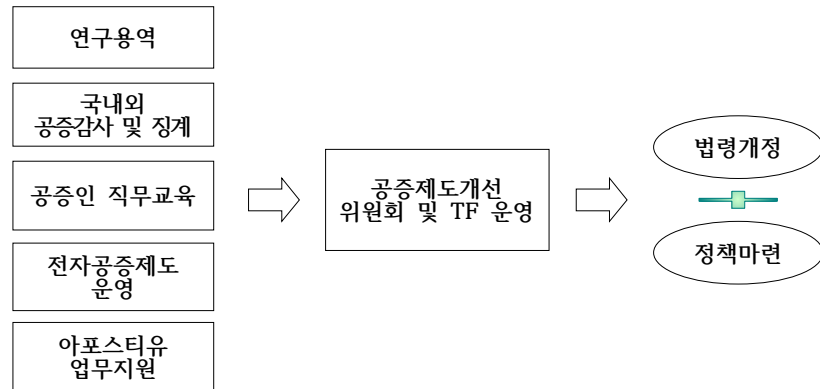
- 2017.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 공증인법 공포·시행
- 2018. 1. ~ 12. 총 176곳 공증사무소 감사, 1회 공증징계위원회 개최, 총 31명 징계(임명공증인 2명, 인가공증인 14곳, 공증담당변호사 15명)
- 2018. 2. ~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 구축 완료
- 2018. 5. ~ 6. 지정공증인 대상 전자공증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 2018. 6. 19. 화상공증제도 시행을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018. 6. 20. 화상공증제도 시행
- 2020. 1. ~ 12. 총 104곳 공증사무소 감사, 1회 공증징계위원회 개최, 총 30명 징계(임명공증인 4명, 인가공증인 10곳, 공증담당변호사 16명)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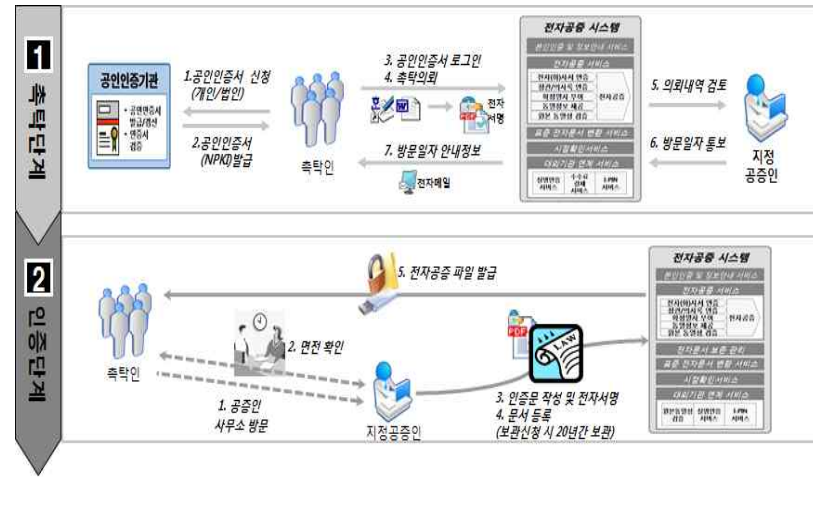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사업규모 : 공증인 329명·곳(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인 246곳, 20.말 기준) 공증처리건수 약 236만건('20.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증제도 업무 절차



- 전자공증시스템 진행 절차



사 업 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법무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3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907	933	933	715	715	△ 218	△ 23.4

4. 사업목적

-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감독 및 비위 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의뢰인과 변호사의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 추진
- 법조윤리협회의 민·상사 법률의 지속적·체계적 연구 및 한국법률가대회 개최를 위한 한국법학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변호사법 제41조(설립절차)

- 변호사제도개선 및 징계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 제89조의3(법조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 한국법학원 지원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2조(보조금)

○ 추진경위

-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등)
 - 2019. 5. 강원도 산불피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 2019. 8.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
 - 2019. 12.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및 제도 개선 세미나
 - 2020. 1. 법률사무종사기관 대상 서면 실태조사 실시
 - 2020. 4. 코로나 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 2020. 8.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위촉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
 - 2020. 12. 마을변호사 가이드라인 배포 등 홍보 실시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 2020. 1. ~ 12. 법조윤리 교육 실시(총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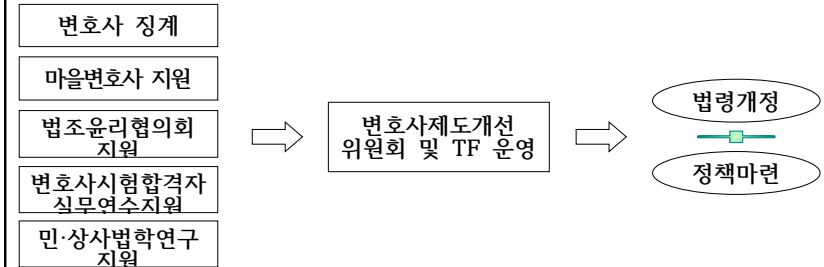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도개선위원회 2개분과, 변호사 등록인원 29,464명, 법조윤리관련 수입 자료 심사 2,816명, 징계개시신청 등 153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민간경상보조(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법조윤리협의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변호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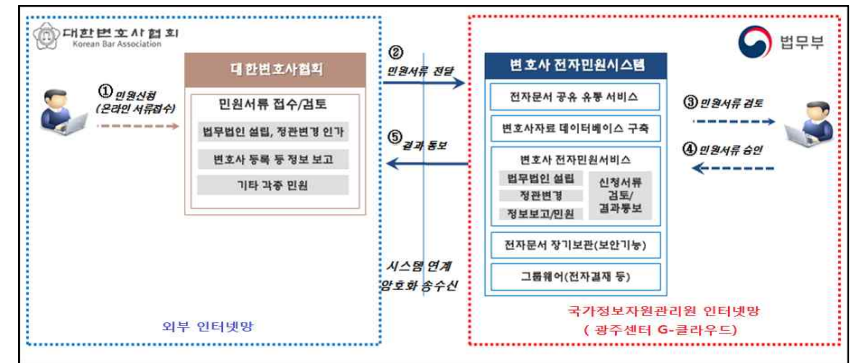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법조윤리협의회	정액	변호사법 제89조의3

7. 사업 집행 절차

- 변호사 제도개선 등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법무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 처리 절차)



사 업 명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5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3,201	3,316	3,316	3,388	3,388	72	2.2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법조인 선발
- 법률시장 개방 등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 추진경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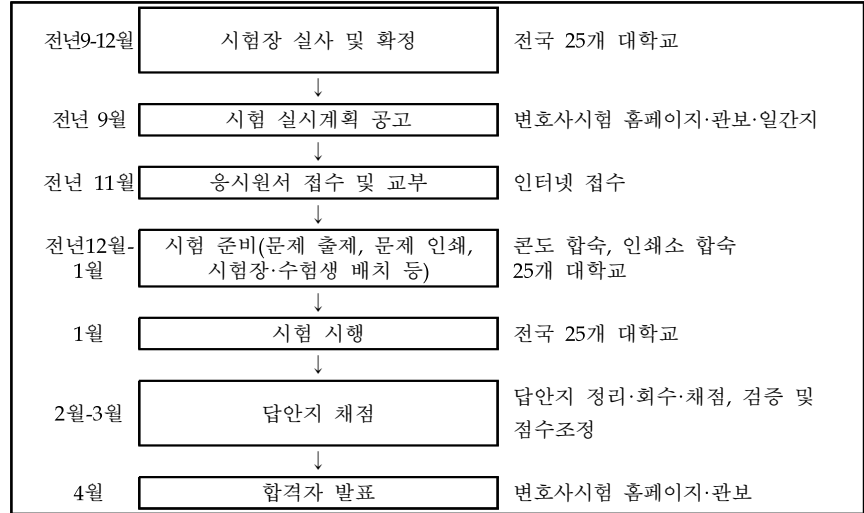
- 변호사시험 :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2. 1월 최초 변호사 시험 실시(매년 1회 실시), 2020년 제9회 시험 실시
- 법조윤리시험 : 2009.8. 변호사시험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 중의 하나인 법조윤리시험을 2010. 10. 9. 최초 실시(매년 1회 실시), 2020년 제11회 시험 실시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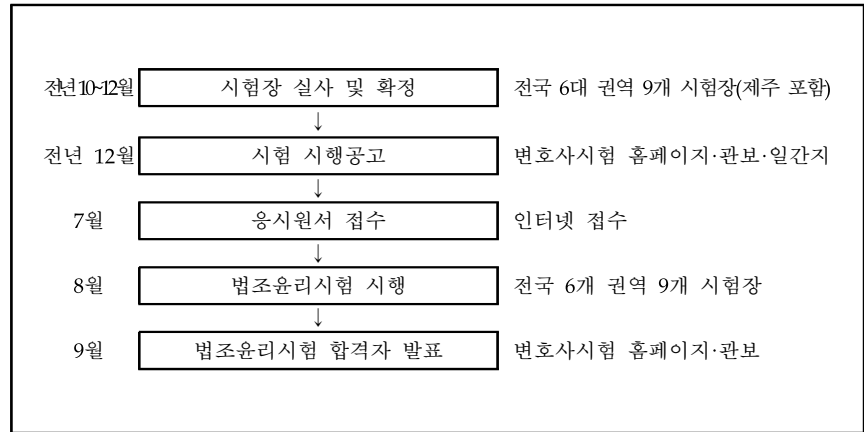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20년 변호사시험) 3,316명 응시/1,768명 합격
('20년 법조윤리시험) 2,129명 응시/1,981명 합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호사시험



○ 법조윤리시험



사업명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104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1	300
명칭	법무활동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506	642	642	732	732	90	14.0

4. 사업목적

-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통일법제 통합DB 내실화, 북한법령 및 통일대비 법률쟁점 심층 연구로 통일대비 법무인프라 확충 및 통일준비를 구체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에관한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9조 제3항 제22호 내지 제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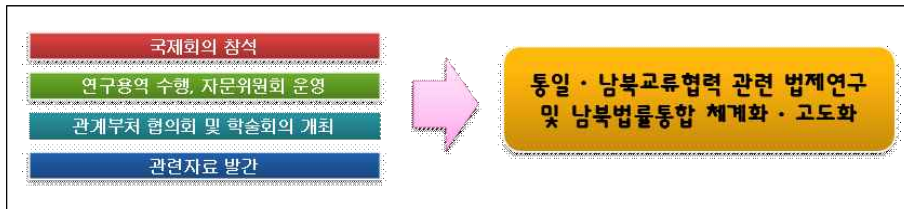
○ 추진경위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은 ① 법무부 및 각 부처의 법률통합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원, ② 남북법률통합(안)을 곧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비, ③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2002년 '베니스위원회 참여사업' 목적으로 최초 예산 배정
※ 베니스위원회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 2006. 6. 1. 베니스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 2006년부터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로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 목적 확대
- 2010. 2. 정부의 대북정책 공유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적된 통일법제 관련 연구성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 2011년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률통합(안) 마련 등을 위한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배정
- 2012. 5.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사업'과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과목구조 개편하여 하나의 단위 사업인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규모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제9기 통일과법률 아카데미 운영, 통일법제 통합DB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법률구조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	1131	300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법률구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법률구조	54,761	53,619	52,519	53,516	53,516	997	1.9

4.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대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인권옹호
- 주택·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임대차 관련 법률분쟁의 해결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 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7조【재판 받을 권리】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책무】
- 법률구조법 제4조 【보조금의 지급】
- 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법 제7조 2항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국가 부담의무】
- 법률구조법 제10조 【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 【예산의 지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② 추진경위

- '56. 8. 여성법률상담소 창설
- '72. 7.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 법률구조사업 추진
- '87. 7. 법률구조법 제정
- '87. 9.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 '88.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인 등록
- '94. 12. 법률구조법 개정(공익법무관 법률구조 업무 종사)
- '96. 6.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법률구조
- '00. 7.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실시
- '02.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법인 등록
- '08. 3. 법률구조법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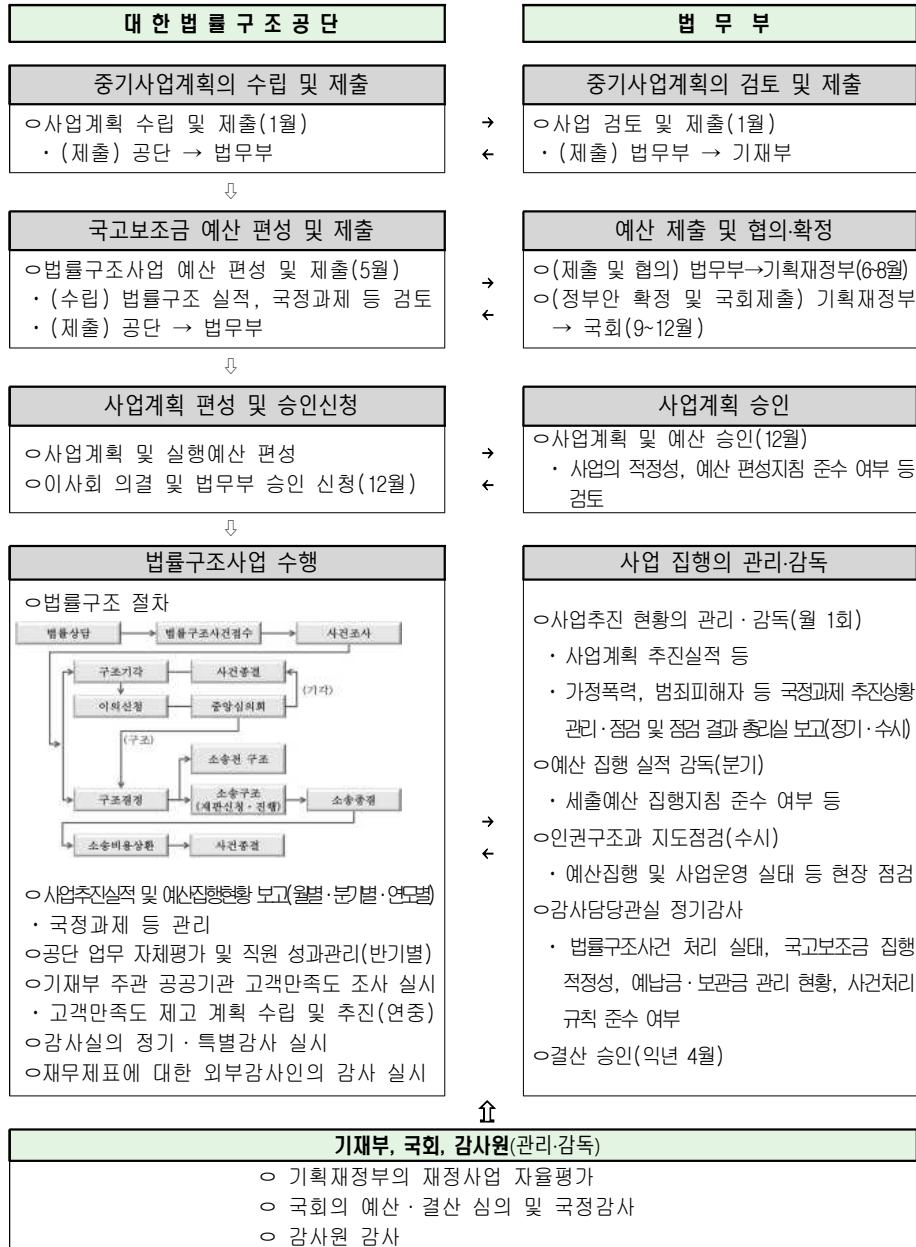
<추진실적('19년 법률구조 실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민사·가사 등 법률구조 168,039건, 형사변호 15,480건, 법률상담 1,399,103건)
 - 임대차분쟁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접수 2,192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접수 499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사, 가사 등 법률구조 18,569건, 법률상담 131,737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민사, 가사 등 법률구조 4,617건, 법률상담 16,964건)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사업 수혜자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 범죄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임금채불근로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상가건물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의무, 상가 권리금 분쟁, 기타 주택·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분쟁 당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168	4,549	4,549	4,570	4,570	21	0.5

4. 사업목적

-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출장·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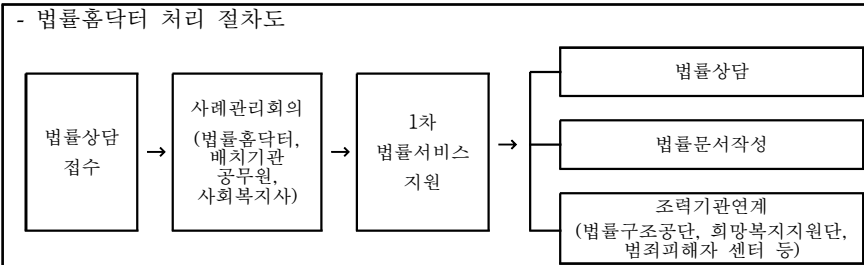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9호 및 제11호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제1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3호, 제7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3항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1. 4~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에 연구용역 시행
 - 2011. 4~2012. 3.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실시
 - ※ 강서·광진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공익법무관 3인을 1명씩 배치
 - 2011. 7. 제8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중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세부과제로 선정
 - 2012. 5. 법률홈닥터 20명 정식채용, 지방자치단체 11곳, 사회복지협의회 9곳 배치
 - 2014.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과제로 선정
 - 2014. 5.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20곳에서 40곳으로 확대
 - 2017.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17. 2월 10명, ‘17. 5월 10명), 배치기관 40곳에서 60곳으로 확대
 - 2017.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과제로 재선정
 - 2018. 2.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서비스 개시
 - 2018. 5. 법률홈닥터 5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60곳에서 65곳으로 확대
 - 2019. 6.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연계 강화
 - 2020. 8.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법률홈닥터 법률상담 연계 개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년부터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률복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인권교육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0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인권교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권교육	218	-	-	219	219	219	순증

4. 사업목적

- 「국가 법질서 확립」의 전제 조건인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기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성과 현실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법무·행정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 사건 사전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VII.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고문방지협약 제10조,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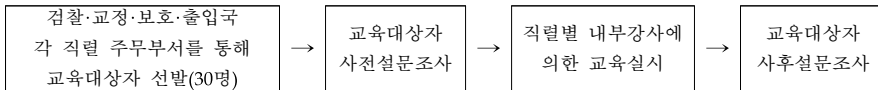
- 2006. 5. 법무부의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권국 설립
- 2007. 5. 확정·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요 이행과제 중 하나로, 법집행과정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 예방하여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경쟁력 도모위해 사업 실시
- 법집행 작용의 현실과 법무행정 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인권교육 시행 필요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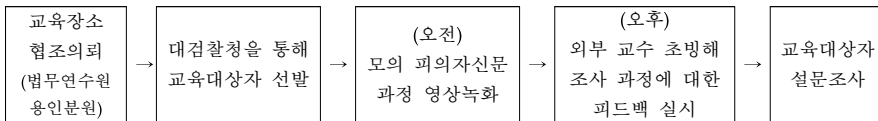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 사업 수혜자 : 법무행정·집행 관련 공무원 및 피의자, 수용자, 피해자 등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권감수성훈련



○ 1:1 맞춤형·체험형 교육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사 업 명

아동인권 증진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2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아동인권 증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아동인권 증진	170	193	193	218	218	25	13.0

4. 사업목적

- 아동학대처벌법 제·개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증진 연구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사법영역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 증진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5년

- 추진배경 :

-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은 9배 가량 증가(학대판정 '01년 2,105건 → '16년 18,700건)하고, 2016년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엽기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발견되는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한 개 부처 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지영역과 사법영역으로 소관사항을 나누어 협력하기로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여 '13. 12. 31. 두 법안 국회통과
- '14. 2. 28.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범 부처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 4. 11. 당정협의회, 4. 12. 정책현안점검회, 4. 16. 당정청협의회, 5. 29.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14. 9. 29.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500여명에

대한 현장조치·수사·재판·아동보호절차 등 사법영역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게 되었으며, 국내 인권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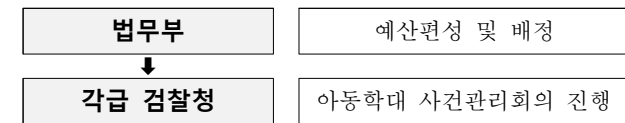
- '16. 3.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법무부·복지부·교육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법정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마련
 - ※ '18.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재점검 및 보완
- 이후 신고자 보호제도 법제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교육, 신고의무제 등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활동,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20. 3. 제정이후 5년이 경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소요를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설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18세미만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집행 절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관련 처분 결정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 아동의 이익을 반영하고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는 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제인권역량 강화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11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제인권증진	국제인권역량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인권 역량강화	110	156	156	159	159	3	1.9

4. 사업목적

-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인권정책과의 연계 강화
 - 유엔 인권규범에 대한 민간 전문인력 채용 및 유관부처·시민사회·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기초로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유엔의 심의·질의·조사·개인진정 절차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권 보호·증진 체계 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등에 따라 법무부는 인권옹호 사무의 일환으로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인권 관련 국제조약 법령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383호) 제3조에 따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주관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4. 위원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진정을 심리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은 '78년부터 현재까지 7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법무부는 이 중 3개 협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총괄부처임

- 위 3개 협약은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국내인권상황 심의 수검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심리 절차를 둠
- 법무부는 그 외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등 기타 인권기구의 조사·질의에 대해서도 위 3개 협약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의 주무부처임
- 이에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국내인권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국내인권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17년 '국제인권역량강화 및 국제인권DB구축' 사업 신설

-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위한 연구 및 검토
-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검토·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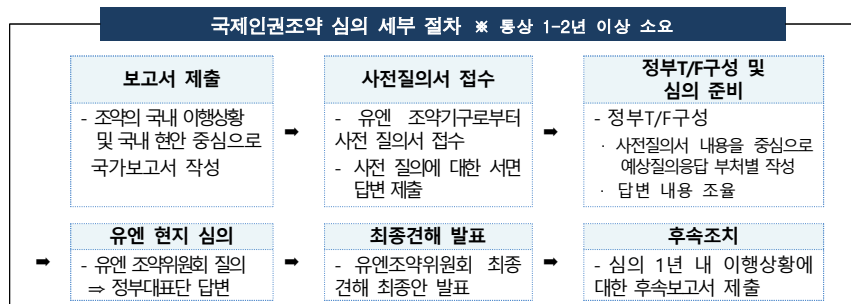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 사업 수혜자 : 인권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제인권조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관련 업무

- 국제인권조약위원회에 제출되는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대응



- 국제인권조약위원회 등에 제기된 개인진정에 대한 정부답변서 작성
- 기타 국제인권규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제출 수시

사업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분야 코드번호	부문 코드번호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범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9	301
명칭	인권활동	국제인권증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99	203	203	195	195	△8	△3.9

4. 사업목적

- 북한인권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제4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 추진경위
- 사업시작 년도 : 2017년
- 추진배경

- 북한인권법 제정('16. 3.)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16. 10.)
- 북한인권법 입법취지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이를 통한 인권침해 억제
- 국정과제 :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 중점과제
-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인 분석·보존·관리
- 북한인권자료의 DB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이민정책개발지원 (1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출입국관리	국제이민협력	이민정책개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이민정책개발지원	381	406	406	395	395	△11	△2.7

4. 사업목적

-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사례연구 및 정책 관련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이민정책개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제22조
- 추진경위
 - 외국인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과 국제교류를 활성화

-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국제역량과 전문성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출입국관리해외연구 및 출장계획수립(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위탁교육훈련)→ 해외사례연구 출장자 선발 → 출장 및 파견 명령 → 출장업무수행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법무부 지식마당 등재(직원 공유) → 직원업무 활용 → 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사 업 명						
이민정책연구원운영 (12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2
명칭	출입국관리	국제이민협력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이민정책연구원운영	1,717	2,274	2,274	2,024	2,024	△250	△11.0

4. 사업목적

- 국가 간 이주현상을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연구과제 수행으로 효과적인 외국인정책 수행을 위한 연구원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및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09.6.30)
- 추진경위
 - ‘07.11.19. 법무부-국제이주기구-경기도 3자간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
 - ‘09.06.30 국제기구인 IOM과 협정체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이민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정책연구원	정액	- 국제기구인 IOM과의 협정에 의거(‘09.6.30협정체결)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7. 사업 집행절차

- 이민정책연구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승인 → 국고 교부 → 이민정책 연구원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산

사 업 명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12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42,420	39,754	39,754	41,222	41,222	1,468	3.7

4. 사업목적

- 출입국기관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 지원으로 원활한 이민행정 업무 수행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령)
- 추진경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의 시설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수요과약 → 예산확보 및 편성 →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계약 → 시설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 예산집행 → 결산

사 업 명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12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4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4,282	4,467	4,467	4,438	4,438	△ 29	△ 0.6

4. 사업목적

- 외국인등록증 발급개선을 통한 신분증 위조방지 보안요소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1항
 -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2009. 06. 외국인등록증의 허술한 보안요소로 인한 위·변조 관련 문제점 지적
 - 2009. 10. 전문기관 위탁발급, 보안성 강화 등 외국인등록증 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1. 01.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 신설 및 ○○○○ 발급 위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수료징수 → 등록증 인쇄의뢰 → 발급비용 예산집행
→ 외국인등록증 교부

사 업 명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13,792	13,792	20,980	20,980	7,188	52.1

4. 사업목적

- 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및 국적·난민업무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업무 포털시스템 등 운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
- 출입국·이민행정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 「출입국관리법」
- 추진경위
 - 각 세부사업별 분산되어 있는 출입국관련 정보화사업 예산의 통합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노후 심사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수요파악 → 예산확보 및 편성 → 소속기관 정보화예산 계약 → 사업수행 관리감독 및 검사 → 예산집행 → 결산

사 업 명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보호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외국인보호관리	14,169	15,174	15,168	16,665	16,665	1,497	9.9

4. 사업목적

-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관리 등 적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6조(외국인의 일시 보호),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해제)
- 추진경위
 -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퇴거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계획 수립(출입국관리법 46조) → 불법고용주 및 외국인 단속(출입국관리법 제18조,21조,47조,81조)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실 및 보호소 수용(출입국관리법 제51조,63조) → 강제출국조치(출입국관리법 제46조)

사 업 명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사회통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1,740	12,800	12,439	13,631	13,631	1,192	9.6

4. 사업목적

-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제21조(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세계인의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등)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 난민법 제6조~제45조(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통역, 난민위원회 설치·운영, 난민 신청자 등의 처우, 생계비 지원, 재정착난민 수용 등)

- 추진경위

- '07.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 '09. 7.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12. 10. 외국국적동포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실시
- '13. 7. 난민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기관 선정 방법 : 공모)	정액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통합 계획수립 → 각 기관별 세부계획수립 → 각 기관별 재한외국인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실시 → 결과보고 → 사업별 분석

사 업 명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2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4
명칭	출입국관리	외국인체류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7,385	10,231	8,731	10,789	10,789	2,058	23.6

4. 사업목적

- 외국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향후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 추진경위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기관 (운영기관 선정 방법 : 공모)	정액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계획수립 → 이수제 운영기관 신청(사업계획제출) → 이수제 운영기관 선정 → 이수제 교육 신청 → 이수제운영기관 교육대상자 소양 평가 → 교육대상자 교육반 편성 → 교육실시 → 평가 → 국적취득 → 이수제 실적보고서 분석 및 평가

사 업 명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청시설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검찰청시설운영	67,676	69,071	67,648	96,658	70,057	2,409	3.6

4. 사업목적

- 전국 66개 검찰청 시설의 운용 및 유지 관리를 통한 검찰 수사 지원
- 체계화된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사 보안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 추진경위
 - 검찰청 시설운영과 관련된 청사유지 및 관리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검찰국의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1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검찰국의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검찰국의훈련및 국제형사협력지원	6,676	7,291	6,891	10,942	7,291	400	5.8

4. 사업목적

- 선진 각국의 법률제도·형사정책 연구 및 검찰제도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위한 검사 및 수사관 국외훈련
-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조약체결 교섭
- 외국 수사기관과의 기관 간 협력협정 및 친선교류
- 국제회의 및 국제형사재판소 참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757호)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9호)
 -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 국가수형자이송법 및 유럽수형자이송협약 등
- 추진경위
 -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필요성 증대
 - 법무·검찰의 국제업무 수요 증가
 - 검찰공무원이 참석해야 할 국제협상, 국제회의의 수요 증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국의훈련
 - 검찰해외연수 계획수립→ 연수희망자 선발→ 파견명령→ 연수보고서 제출
- 국제형사협력
 - 외교통상부로부터 조약체결의뢰 및 국제회의 참가요청 접수→ 조약체결 타당성·국제회의의 참가 타당성 검토→ 예산검토→ 외교통상부에 조약협상회담, 국제회의의 참가승인 및 대표단 선정통보 → 사업시행

사 업 명						
과학수사인프라 구축(13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2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과학수사인프라구축	6,583	7,541	7,541	10,940	8,088	547	7.3

4. 사업목적

- 영상녹화 조사를 통한 수사과정의 투명화·과학화로 인권존중의 선진 수사시스템 구현
- 각종 감청·감식관련 첨단 장비도입 및 기법 개발, 전문요원 확충으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
- 강력사범 검거율 제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인력 운영 및 체계화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집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추진경위

- 2007. 6.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녹화조사팀 구성, 영상녹화조사 관련 증거방법 다양화 연구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 집무규칙 개정 및 영상녹화 지침마련
- 2015. 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사장비 도입 및 배정
 - 대검 감청·감식실에서 사용할 감청·감식장비 및 일선 청에 배정할 과학수사장비에 대하여 소요량 파악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매 진행 후 배정
- 강력범 검거율 제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유전자감식정보 DB 구축 등

사 업 명
국제형사협력 지원(ODA)(13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3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국제형사협력 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형사협력지원(ODA)	626	2,696	2,696	2,796	2,641	△55	△2.0

4. 사업목적

- 저개발국에 대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통한 수원국의 마약 통제역량 강화 및 국제공조 강화
-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및 UNCCPCJ(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부담금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추진경위

- 수원국의 마약퇴치 지원사업 요청 → 수원국과 업무협의를 → 수원국으로 마약 감식 및 수사 장비 지원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수행관을 수원국으로 파견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 사업 추진, 초청연수 및 마약퇴치캠페인 등 대면이 필수적인 활동은 생략

사 업 명
형사사법증거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린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R&D)(133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5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형사사법증거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린티어기술 연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형사사법증거 검증체계고도화및 프린티어연구개발	-	1,375	1,375	2,420	2,420	1,045	76.0

4. 사업목적

- 형사사법 시스템상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증거 획득·분석·검증체계 기반 구축, 미래 분석기법 표준화,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강화 목적
- 디지털·DNA·진술·법화학 증거 등 대량의 복합 범죄증거를 AI 등을 활용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연구를 통해 법과학 증거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증명력을 제고하여 형사사법 최종 단계로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재판결과의 신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6
-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추진경위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획(2018. 9.)
- 대검찰청, 한국연구재단 공동으로 과학수사 대학(원) 생 중심 공모전 겸 연구개발 수요조사(2018. 10. 60건 응모 중 8건 채택)
- 대검찰청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관련 과학수사부 자문회의 2회 개최(4/12, 4/30)
 - ※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과제 내·외부 수요조사(내부 13건, 연구진 제안 1건, 외부 60건 중 내부 심사 결과 채택된 8건)를 거쳐 최종 3개 내역사업 14개 과제를 2019. 4. 30. 과학수사부 자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 ※ 다만, 외부수요조사는 과학수사 관련 대학(원)생 중심의 수요조사 과정으로 선정된 과제 단위에서 포섭하는 안으로 확정하여 연구 개발 투자 우선순위 설정
- 대검찰청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용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4. 12)을 통해 기획 보고서 작성 및 연구 수행
- 법과학 분야 R&D사업 신설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R&D 예산 요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자문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국회 사업설명
- 2021년도 ‘형사사법증거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린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 확정(2020. 12.)
-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2020. 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2023
- 사업규모 : 2,420백만원/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1334-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500
명칭	검찰활동	검찰업무정보화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0,093	30,386	28,886	35,159	34,191	5,305	18.4

4. 사업목적

- 검찰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지원
- 검찰정보화 인프라 개선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검찰 정보보안 강화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법률 제14474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4579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4080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2844호)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4호)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107호)
- 추진경위
 - 1985. ~ 1999. 사건사무 등 검찰업무전산화 사업 추진
 - 2000. 수사정보, 전자결재시스템 등 구축
 - 2003.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전자 민원시스템 등 구축
 - 20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12.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2016. 보안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추진
 - 2017. 검찰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시스템 구축
 - 2020.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타당성 검토 → 조달청 계약의뢰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사 업 명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333-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1
명칭	검찰활동	검찰운영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1,756	12,538	12,538	21,780	10,856	△1,682	△13.4

4. 사업목적

- 범죄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 저장 방식의 다양화, 저장 용량의 대형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 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증거의 효율적인 도출·분석과 증거의 엄정한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개선 및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연구·개발
- 대형화·첨단화되는 사이버테러, 해킹, 개인정보 도용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능동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수사(지원) 기구 및 인력 인프라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추진경위

- 1996. 7. 1.자 ‘개정형법’ 시행에 따라 2개청(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 2015. 2. 대검 과학수사부 출범
- 2015. 12. 자체 개발 모바일포렌식도구 배포
- 2016. GPU 기반의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구축
- 2016. ‘사이버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사이버수사지원 시스템’개발
-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지원 시스템 개발
- 2020. 주요포털이메일 압수도구(eFA) 개발
- 2020.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
- 2020. 6. 전국청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검찰청 사업 발주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 수행 → 사업완료

사 업 명						
검찰수사지원(133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0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 강화	검찰수사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검찰수사지원	26,691	27,180	27,180	33,365	28,416	1,236	4.5

4. 사업목적

-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전문 수사역량 강화 지원
-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되는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립
-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검사, 수사관으로 선발하기 위한 심층 실무학습 및 선발 절차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법원조직법, 동법 시행규칙

○ 추진경위

- 기본적인 형사정책 수립, 형사법령정비 등 검찰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활동을 위해 2004년부터 검찰해외연수 및 수사지도 세세항을 검찰해외연수와 검찰수사지도 사업으로 분리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수사일반(13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1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수사일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수사일반	84,595	87,028	86,138	103,327	88,508	2,370	2.8

4. 사업목적

- 검찰 수사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지원
- 일반 형사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86호)
- 추진경위
 - 국가 법질서 확립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범죄 수사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공수사(133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2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공공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공공수사	4,740	5,625	5,625	5,388	4,899	△726	△12.9

4. 사업목적

-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 및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선거사범, 국가안전위해사범,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
- 시대 변화에 상응한 공공수사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공직선거법(법률 제8423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법률 제8424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8364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8158호)
 -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 등

- 추진경위
 - 선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
 -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 확보로 편파시비 차단
 - 노사분규의 합리적 대처로 선진 노사문화 구현
 - 법집행의 노사 형평성 확립 및 노사분규 원인 제거
 - 각종 지역·지역 단체의 불법집단행동 엄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133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3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2,956	12,924	11,593	19,818	13,912	2,319	20.0

4. 사업목적

- 보이스피싱, 사행성게임장, 불법사금융 등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체계 구축
- 조직폭력, 지능형·경제형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로 민생치안 확립을 통하여 안정된 서민 생활 기반 조성
-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지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지원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 지원
- 대포와의 전쟁 등 신종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지원 및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수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86호)
- 추진경위
 - 지능화·홍포화 되어가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통하여 안정된 국민생활의 기반조성
 - 국민생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총력 수사체제를 갖추어 대응하고, 학원폭력사범 등 청소년기부터 폭력조직 유입가능성을 적극 차단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와 서민생활을 불안전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 엄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마약수사(1335-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4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마약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마약수사	4,358	4,923	4,923	5,708	4,876	△47	△1.0

4. 사업목적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마약류 사범 및 공급조직 적발
- 국내·외 마약사범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지원
- 검찰 주도의 국내 통합 마약수사체제 구축
- 국제마약수사공조 강화로 마약류 밀수 원천 차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등

○ 추진경위

- 1989. 2.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팀 신설 전국 10개 주요 공항·항만에 검찰 마약분실 설치·운영
- 1996. 11. 전국 검찰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영, 지속적인 마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01. 4.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 전국 34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통합수사체제 전환
- 2009. 3. 공항, 항만 관한 거점청에 인력 재배치하여 전국 36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 2011. 5. 마약류공급국가(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1.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5. 8.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 필리핀 마약청(PDEA) 7개 지부에 대하여 단속 장비 지원, 직원 교육·훈련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조수사 활성화
- 2017. 12. 전국 6대 강력부 설치 지검(각 1대) 및 인천공항(2대)에 마약류 탐지기 8대 구입·설치 완료하여 신속한 마약류 탐지 및 수사개시 가능
- 2018. 1. 대규모 마약류 밀수 및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유통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 위해 광역수사체제 전환, 6대 지검 위주의 인력 재배치로 수사역량 집중
- 2019. 8.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밀수 및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단속 주력 위한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운영,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20. 11.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 사전 차단을 위해 검찰 마약수사관을 태국 마약청에 파견하여 실시간 공조수사 시행하여 적극 대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마약류 없는 사회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 달성을 위하여 ①마약류공급 강력차단 ②마약류수요 철저감축 ③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국제적 협력체제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집행

사 업 명						
성범죄등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단속(1335-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5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성범죄등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단속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성범죄등사회적약자 대상범죄단속	3,302	3,005	3,005	3,952	3,410	405	13.5

4. 사업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총력 수사체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추진경위

- 성폭력 전담검사 T/F 구성 등 검찰의 우수 인력을 성폭력 분야에 배치하여 전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TF 운영을 통해 양형기준 정비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 처리기준」 개정·시행('15. 12.)
- '17. 5. ~ '17.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편 등 TF 운영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수사 지침 및 절차 방안 연구, 성폭력 사건 수사매뉴얼 재정비
- '17. 11. 「소년범죄 대책 TF」 운영('17. 11. ~ '18. 4.)을 통해 소년 형사사법체계 및 소년사건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방안 등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상반기 검사 인사 후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관련범죄 전담검사 지정 점검 및 관련 업무 매뉴얼(업무지침 등) 송부('20. 02.)
- 일선 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20. 03.)
- 일선 청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지시('20. 03.)
- 성착취 영상물 관련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사건 엄정 대응 지시('20.04)
- 성매매알선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 개정('20.06)
- 하반기 검사 인사 후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등 관련범죄 전담검사 지정 점검 및 관련 매뉴얼(업무지침 등) 송부('20.06)
- 변화하는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선을 위한 전담TF 활동('20.10~'20.1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민관유착비리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133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6
명칭	검찰활동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민관유착비리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민관유착비리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단속	7,660	7,403	6,738	8,069	7,150	412	6.1

4. 사업목적

-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사 강화
-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비리 척결을 통한 투명성의 구축
- 공공기관 비리, 보조금 비리 수사를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추진경위

- '14. 2. 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실행과제로 '공공기관 비리 근절', '보조금 개혁' 선정
- '14. 5. 19. 대통령 담화, 민관유착비리 척결
- '17. 5. (대통령 공약)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 강화, 경제 투명성과 사회 공정성 저해 범죄 엄단, 국민안전권을 저해하는 부패범죄 실효적 단속, 국부유출 비리 엄단, 국고보조금 비리 철저 수사 및 국고손실 체계적 환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소유지(133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공소유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공소유지	1,109	1,989	1,989	13,481	2,010	21	1.1

4. 사업목적

-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원교육 등 인적·물적 지원
- 공판중심주의 실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2008. 1. 1.부터 시행)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추진경위

-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적극적 대응
-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1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444	2,197	2,197	8,103	4,056	1,859	84.6

4. 사업목적

-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자유형·재산형 미집행자 추적 검거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 재산형 집행으로 국가 세입 증대 기여
- 부패범죄, 마약·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범죄자의 은닉 재산 자금 추적, 재산 파악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검찰징수사무규칙(법무부령)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 추진경위
 -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 및 검거능력 강화
 - 국가 형벌권 집행을 통한 재산형 집행으로 국가 세입 증대
 - 범죄수익환수반 운영 강화
 - 2006. 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출범
 - 2010. 7.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 전국 청 오픈
 - 2014.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정금 집행 강화 방안 수립·시행
 - 2015. 12. KICS 외국인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 2017. 1. 사회봉사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 정립
 - 2017. 2. 노역장유치 집행대상자 신병관리 철저 재지시
 - 2017. 7.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확대 시행
 - 2017. 12. 벌과금 집행유예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지시
 - 2018. 1.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및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 2020. 1. 벌과금미납자 검거·호송 전용차량 배정 및 지급
 - 2018. 5. 환자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시행
 - 2018. 6.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
 - 2019.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시행(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 추가)
 - 2019. 8.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 시행(피해재산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
 - 2019. 12. 국가전관판을 활용한 범죄수익환수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 2020. 1. 제31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최종 상호평가 총회 참석
 - 2020. 4.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적극 청구 지시
 - 2020. 7.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 2020. 12. 벌과금미납자 검거·호송 전용차량 추가 배정 및 지급
 - 2020. 12.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2차 고도화 사업 완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보상(1337-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2
명칭	검찰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사보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형사보상	40,138	37,313	37,313	46,817	40,000	2,687	7.2

4. 사업목적

-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 보상금 지급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 1957년 형사보상법 제정으로 보상금 지급 개시
 - 2008년 무죄비용 보상제도 도입
 - 무죄판결·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적정 지급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 유지 및 증대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에게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선임료 등 보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법정비(133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300
명칭	검찰활동	형사사법선진화	형사법정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형사법정비	289	258	258	430	295	37	14.3

4. 사업목적

-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형사법 개정
- 법규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형벌 처벌 기준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006.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형사실체법 정비과제 법무부 위임
 - 2006. 8. 30. 대통령 지시사항(50개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비전2030 추진지시)

○ 추진경위

- 2007. 4. 24. 국무회의에서 비전 2030 법무부 소관 사법개혁과제로 형법 등 형사실체법 정비보고
- 2012. 8.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각칙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 2013. 3. 5. 국회 의결, 4. 5. 공포·시행
- 2014. 6.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한 중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 2015. 12. 9.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 통과
- 2017. 8.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업명

교도소행정지원 (15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도소행정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어린이집)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A)		2021년(B)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도소행정지원	29,620	40,005	40,005	43,095	43,095	3,090	7.7

4. 사업목적

- 전국 교정시설 행정경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화 도모
- 어린이집 운영으로 여성 공무원 육아부담 해소
-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지원으로 민간 위탁 교정시설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제수형자이송법」

② 추진경위

- '04년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및 교정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7개소, 민영교도소 1개소, 직장어린이집운영 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및 법정민간대행(민영교도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장어린이집	5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재단법인 아가페	9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7. 사업 집행절차

전년12월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1월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1-12월	각 기관별 사업 집행	교정기관(민영교도소 포함)

사 업 명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A)		2021년(B)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68,020	70,396	63,354	79,655	79,655	9,259	13.1

4. 사업목적

- 전국 교정기관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전자 경비시스템 설치, 수용거실 출입문 자동화 등 시설·장비 현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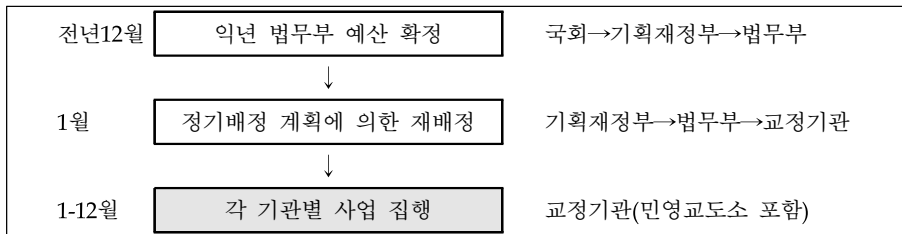
- '95년 노후 교정시설의 적절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교정시설 및 장비운용 사업 신설

- '07년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인력 중심의 교정시설 경비체계를 전자시스템을 통한 경비체제로 전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교정시설현대화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5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 운영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A)		2021년(B)		증감 (B-A)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B-A)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	25,926	25,926	19,786	19,786	△6,140	△23.7

4. 사업목적

- 교정시설에 대체복무역 36개월 복무를 위한 합숙복무 시설개선
- 대체복무 이원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 공공요금, 여비 등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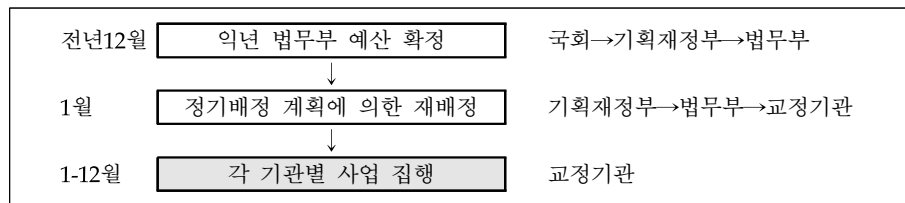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대체복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복무 지원을 위해 '19년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0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A)		2021년(B)		증감 (B-A)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B-A)	(B-A)/A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28,319	220,216	213,872	238,000	229,255	15,383	7.2

4. 사업목적

-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자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지원
- 수용자 처우(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수용자 생활용품 지급확대 등으로 기초생활 환경 개선
- 급식수준 및 피복품질 향상 등으로 수용자 처우개선에 기여
- 외부병원 진료 확대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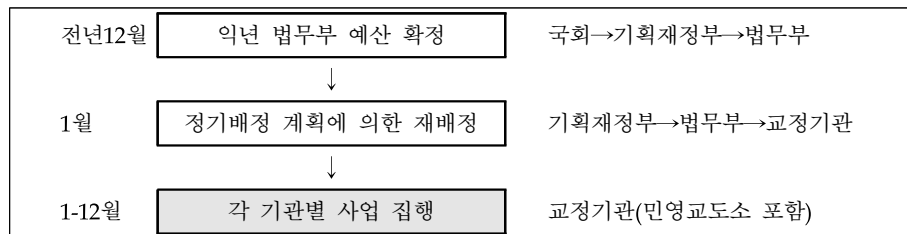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수용자 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수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소자수용관리 사업 신설
- '04년 수용환경 개선 등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요금 적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교정교화 (15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1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교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A)		2021년(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정교화	7,742	7,072	7,072	14,177	9,775	2,703	38.2

4. 사업목적

- '교정활동의 궁극적인 핵심사업'으로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를 목표로 시설 내 성폭력사범 및 마약사범 등에 대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 심리치료센터(정신질환사범, 성폭력, 아동학대사범 등), 분류센터(재범·폭력 고위험군), 혈액투석센터, 교화방송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수용처우 전문센터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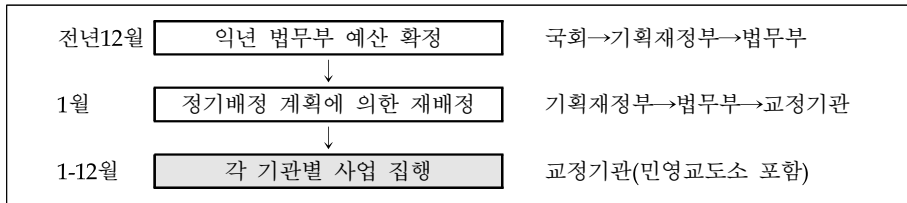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수용자 재범방지교육 강화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03년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7개소, 심리치료센터 등 2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7,307	8,021	8,021	9,168	9,168	1,147	14.3

4. 사업목적

-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의 시설 및 장비를 유지 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시설비, 임차청사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등 지원
 - **소년원** : 보호소년들을 수용,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비행 방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자 및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질환, 마약·약물 중독,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 범법자 등의 수용,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을 방지
 - **보호관찰소** : 법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수감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치료감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소년보호기관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2. 6. 서울남부, 서울북부, 대구,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13.11. 순천, 전주,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14.12. 부산동부, 울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20. 9. 의정부,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치료감호소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5. 8. 치료감호법 제정
- 2009. 1. 성폭력치료재활센터 개청
- 2011. 6. 성폭력치료재활센터 200병상 신축

- 보호관찰소

- 1989. 7. 전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 ~ 현재 19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6개 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2개 등 총 65개 기관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96개 기관(보호관찰소 57, 위치추적관제센터 2,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18, 치료감호소 1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96개 기관(보호관찰소 57, 위치추적관제센터 2,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18, 치료감호소 1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소년원생수용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소년원생수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소년원생수용	18,805	20,983	20,981	21,796	21,796	815	3.9

4. 사업목적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 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대행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지침 제공 및 재비행 방지교육
- 자립생활관 운영으로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의 완전한 사회정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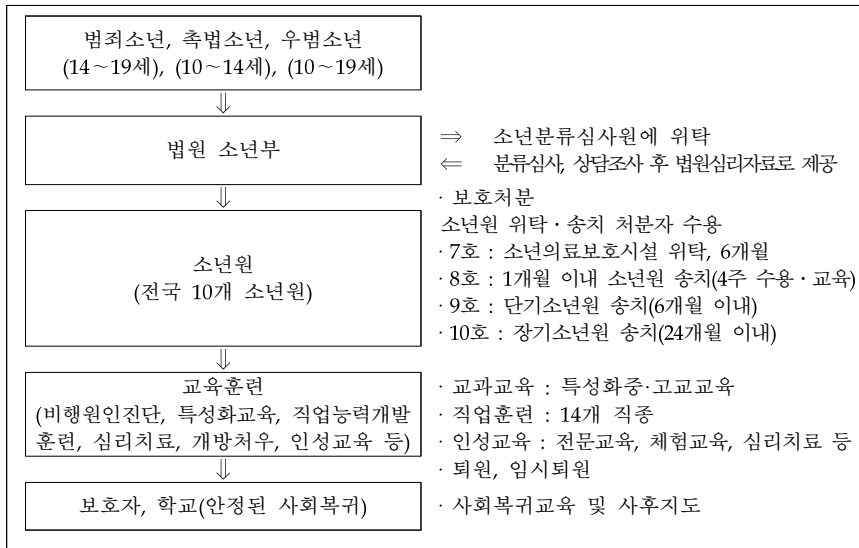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1942. 4. 서울소년원
- 1958. 8. 소년원법 제정
- 1977. 4.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소년원법」) 개정
- 2008.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과정 신설(안양, 대덕소년원)
- 2009. 7. 청주소년원 교육과정 운영(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소년보호 11개 기관(소년원 10개, 분류심사원 1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소년원생, 자립생활관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청소년비행예방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청소년비행예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소년비행예방	4,994	6,060	6,060	5,611	5,611	△449	△7.4

4. 사업목적

- 일탈행동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방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03. 7.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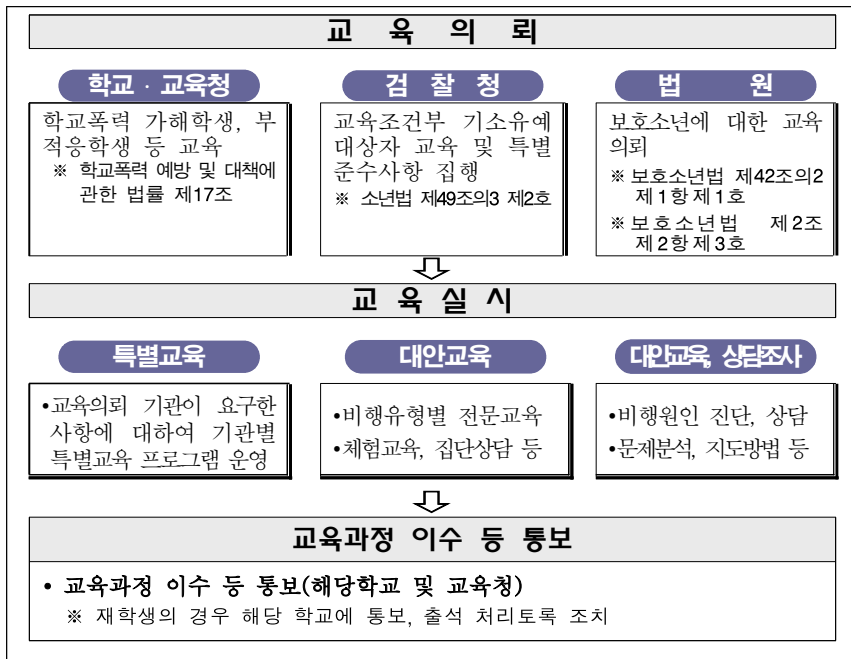
※ 보호소년상담조사제 : 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을 위하여 법원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12. 6. 서울북부, 서울남부 등 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3. 11.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4. 12. 수원, 부산동부, 울산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6. 5. 제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20. 9. 의정부,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1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비행초기청소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갱생보호활동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갱생보호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갱생보호활동	29,110	33,009	33,009	40,565	40,565	7,556	22.9

4.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의탁·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원호지원, 가족회방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 및 갇혀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항(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제65조 제1항(갱생보호의 방법)** 갇혀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갇혀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갇혀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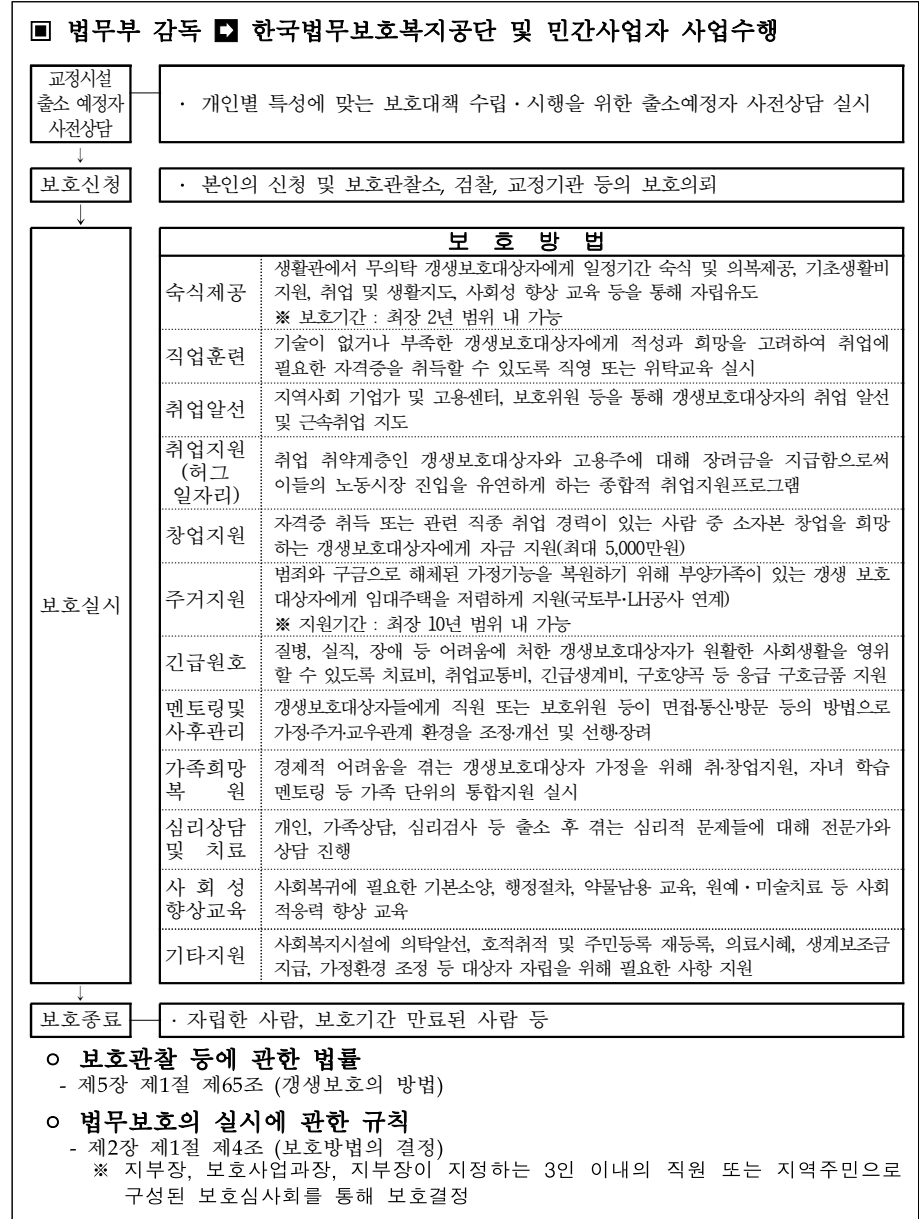
- 1942. 3. 사법보호회 설립(조선사법보호사업령)
- 1953. 3. 사)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법무부 공고 제25호)
- 1961. 9. 갇혀보호회 설립(갱생보호법)
- 1995. 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995.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칭 변경
- 2016.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본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53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106,666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7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사업 수혜자 : 형사처분자 및 보호처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7개 민간법인	78.8% (수치차보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9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치료감호자수용	치료감호자수용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치료감호자수용관리	7,301	7,622	7,622	8,641	8,641	1,019	13.4

4. 사업목적

- 치료감호법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 임상연구 및 선진 외국의 치료감호제도 연구를 통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효과 극대화 도모
- 검찰·법원·경찰로부터 의뢰한 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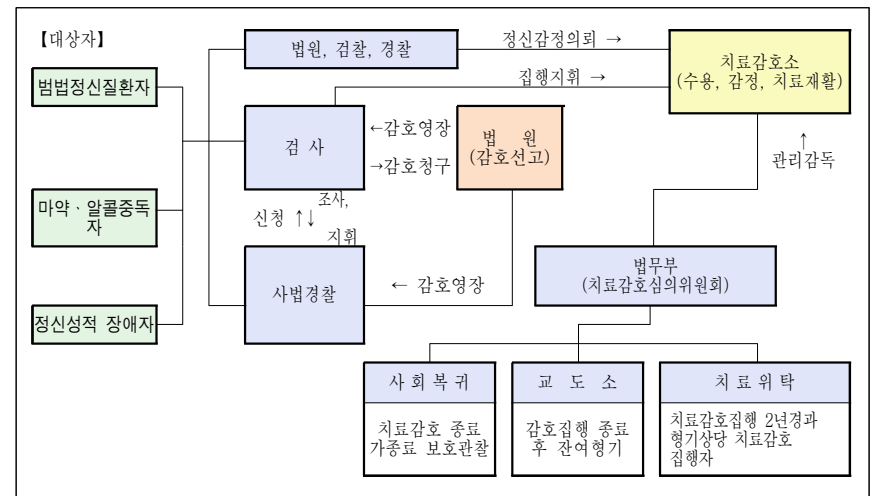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1987.11. 치료감호소 개정
- 1993.11.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5. 8. 치료감호법 제정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08.12. 인성병동 개설
- 2015. 8. 국립부곡법무병원 개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치료감호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치료감호처분 대상자, 정신감정 의뢰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보호관찰 활동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보호관찰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보호관찰활동	11,710	12,005	11,514	12,780	12,780	1,266	11.0

4. 사업목적

-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에게 치료명령을 실시,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 보호
-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실시로 사회적 약자 등 지원강화,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외부강사 등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추진경위

- '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7. 1. 1. 성인법 보호관찰 확대 실시
- '01. 1. 1. 보호관찰 기피자 지명수배제도 실시
- '04. 9. 22.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09. 9. 25.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실시
- '10. 5. 11. 사회봉사 농촌지원 실시(대통령 지시사항)
- '10. 4.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이수명령 도입
- '13. 6. 19.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살인·성폭력·미성년자유괴·강도죄) 실시
- '13. 6. 19. 성폭력사범 판결전 조사 확대 실시
- '13. 6. 19. 성폭력 사범 수강(이수)명령 의무적 부과 및 부과시간 확대
- '14. 1. 28. 아동학대 이수명령 도입
- '14. 9. 29.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결정전조사 실시
- '16. 12. 2. 주취·정신질환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실시
- '18. 1. 7. 벌금형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
- '18. 6. 13.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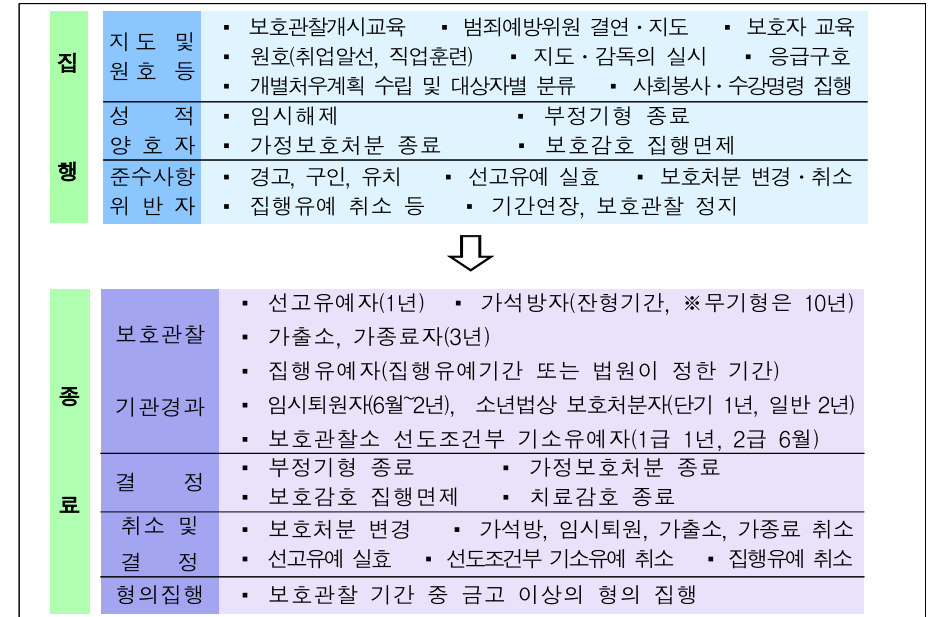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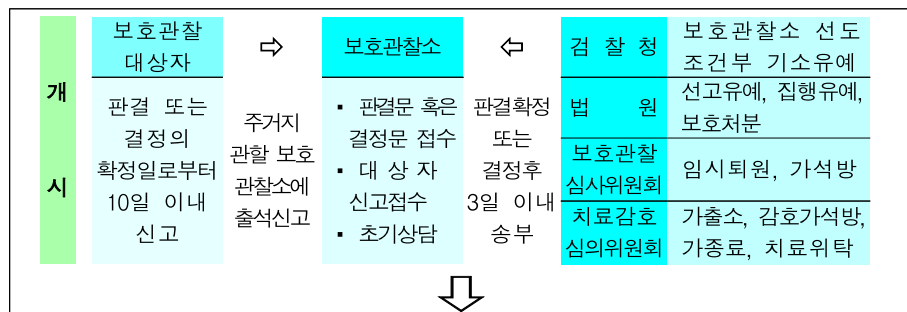
- '19. 4. 24. 아동 성범죄자 대상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 '20. 1. 7. 벌금미납 사회봉사 확대 실시(벌금액 300만원 → 500만원 상향)
- '20. 12.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수강·이수명령 의무적 부과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보호관찰 95,861건 실시('20년)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 집행 136,730건 집행('20년)
 - 조사 25,201건 실시('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대상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전자감독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특정범죄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특정범죄관리	16,852	18,687	18,687	22,215	22,215	3,528	18.9

4. 사업목적

-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 도모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기에 따라 10년에서 30년 간 등록·관리하여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
-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재범 억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05. 4. 한나라당 국회 대표연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추진 제시
- '05. 7.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 '06. 9. 법무부장관 성폭력사범 전자팔찌제도 도입 추진 지시
 - ※ '06. 12.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법무부 수정법률안 제출
- '07. 4.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07. 10.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08. 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08. 9. 1. 시행)
- '08. 9. 박민식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 '10. 3.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10. 7. 16. 시행)
 - ※ 법률개정으로 살인범 확대, 최근 3년간 소급적용, 부착기간 10년 → 30년 확대 실시
- '10. 3.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1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 '1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11. 4. 16. 시행)
- '10. 7.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11. 7. 24 시행)
- '11. 4.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도입
- '12. 11. 법명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개정안 국회 통과
- '13. 3.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약물치료 청구 가능
- '13. 6. 신상정보 등록 업무 법무부로 일원화(공개·고지 업무는 여가부로 일원화) 및 3년 이내('08. 4. 16. ~ '11. 4. 15.) 성폭력범죄자 소급 적용

- '13. 6. 신상정보 등록범죄 추가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13.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 시행
- '14. 1. 산업부와 협업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사업 착수
- '14. 6. 전자감독 부착 대상 강도죄 추가
- '15. 8.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예비사업 실시완료
- '16. 12.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완료
- '16. 12.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1차 개발 완료
- '16. 12. 등록기간 차등화 시행(일괄 20년 → 형기에 따라 10~30년)
- '17. 11.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완료
- '17. 12.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구축 완료
- '18. 1.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재심사 절차 마련,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살인·치사죄 등 추가
- '18.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
- '18. 10. '일체형 전자발찌' 본격 운영
- '19. 02.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실무 적용
- '19. 04.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보호관찰' 시행
- '20. 08.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 도입 및 모든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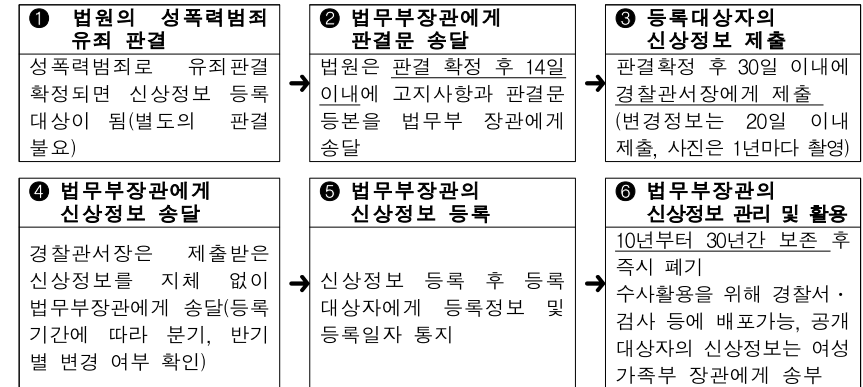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전자감독 대상자 4,052명('20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94,160명('20년)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49명('20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아동 및 여성 등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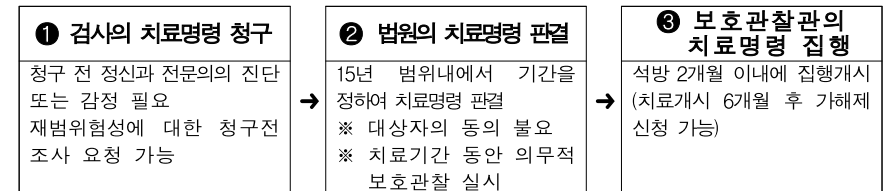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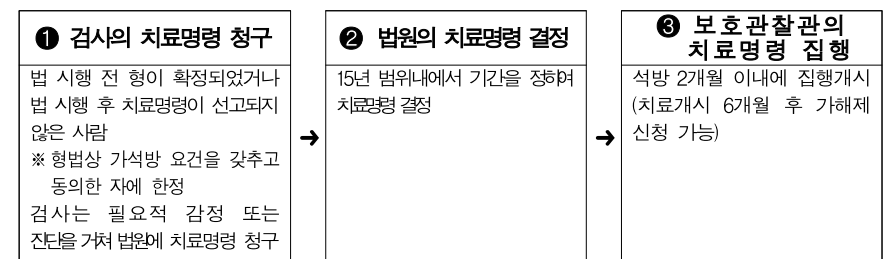


□ 성충동 약물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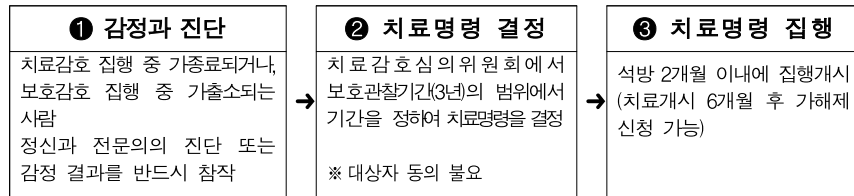
【징역형 등 종료자에 대한 치료명령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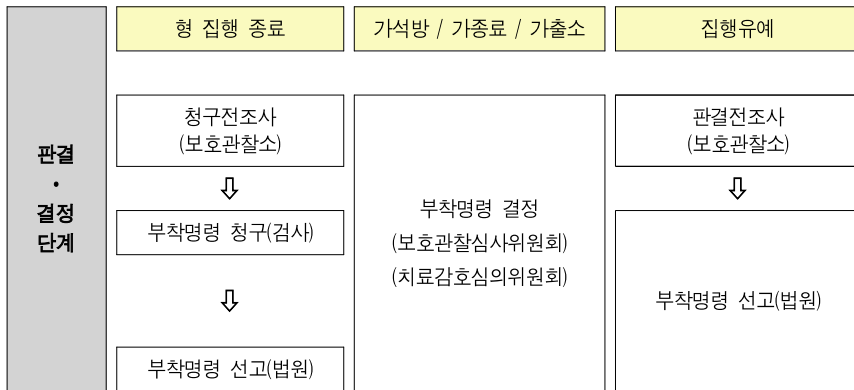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절차】



【가중료자·가출소자에 대한 치료명령 절차】



□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판결문(결정문) 접 수	- 형 집행 종료 및 집행유예 : 법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송부 - 가석방 / 가중료 / 가출소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문 즉시 통보
--------------	---



개시 이전	위치추적(U-Guard)시스템 입력	개시이전으로 관리
	석방예정통보서 접수	석방 5일전 통보(수용시설 등에서 보호관찰소 통보)



집행계획수립	- 석방일시 및 부착명령 집행장소 등 사전협의, 공조집행 시 필요조치 - 전자장치 개통 준비 등 ※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 직원 간 휴대장치에 개별 전화번호 부여, 전자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통신 이상유무 확인
↓	
부착명령	형 집행 종료, 가석방, 석방 직전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집행	가중료, 가출소	- 부착명령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재택감독장치 설치 (단 외출제한자는 지체없이 설치) ※ 전담직원이 수용기관에 출장, 전자발찌 부착 후 정상작동 여부를 관제센터와 확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에 가서 재택 감독장치 설치
	집행유예	- 확정 후 10일 이내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 지체 없이 재택감독장치 설치



집행감독 등	- 처우계획 수립, 수시·불시 접촉면담하며 지도 -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관리·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가해제 신청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 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결정) ※ 3개월 주기로 신청가능



종료	종료사유 발생시 종료	▪ 부착명령 기간 경과 ▪ 형 선고효력 상실(사면) ▪ 가석방 실효 또는 취소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	-------------	---

사 업 명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6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5,972	4,691	4,691	4,463	4,463	△228	△4.9

4. 사업목적

- 지역 네트워크인 범문화진흥센터와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활용한 민관공동 법질서 실천운동을 실시, 부처간 협업과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법질서 존중 분위기 확산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 청소년·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보급,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운영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법교육 실시 및 법교육 인프라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교육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범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② 추진경위

- '07. 7.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문화진흥팀' 신설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 로파크)를 법교육 특화기관으로 지정·운영
- '08. 2. 29.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실' 직제 신설
 -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집중을 위해 6명으로 구성
- '08. 3. 법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교육지원법' 제정·시행
- '10. 2. 24. 차관 직속 전담부서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 발족
- '11. 9. 1.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통합 발족
- '11. 12.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 '12.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전국적 확대
- '13. 9. 1. 어린이 로스쿨 실시

- '14. 11. 19. 제1회 중·고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 '14. 11. 25. 제1회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15. 3. 27. 학생자치법정 1,720개 학교 대상 운영지원 워크숍 개최
- '15. 9. 7.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 개정판 발간
- '15. 11. 9.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 '16. 2. 3.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
- '16. 3. 1. 법사랑학교 프로그램 전국 초·중학교 2,205개 학급 운영
- '16. 7. 8.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
- '16. 12. 28. 법사랑 사이버랜드 전자도서관 개설
- '17. 3. 20.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1,023개교 모집 및 프로그램 권역별 워크숍 개최
- '17. 4. 3. 제8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온라인 예선 실시
- '17. 5. 17.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본 심사 등 예선 실시
- '17. 5. 22. 제4회 헌법사랑 토론회 토론회 심사 등 예선 실시
- '17. 6. 12. 찾아가는 법교육, 울릉도 학생·주민 대상 법체험 축제 개최
- '17. 7. 24. 하계 초·중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17. 8. 24. 제8회 중학교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 '17. 10. 20.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전남 광양)
- '17. 11. 14. 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17. 11. 21. 제12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17. 11. 29. 2017년 헌법사랑 토론회 개최
- '17. 12. 14. 법교육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개최
- '18. 1. 9. ~ 1. 11. 정부부처 연계 자유학기 진로체험 페스티벌 참가
- '18. 4. 13.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956개교 모집 및 권역별 워크숍 19회 개최
- '18. 6. 12. 제9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4개 권역) 지역예선 실시
- '18. 6. 22. 제2회 고등학생 생활법동아리 경연대회 운영보고서 심사
- '18. 6. 15. 제13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2개 권역) 지역예선 실시
- '18. 6. 15. 제5회 헌법사랑 토론회(2개 권역) 지역예선 실시
- '18. 6. 4. ~ 7. 17. 찾아가는 법교육, 경기 안성, 전남 신안 등 진로체험 페스티벌
- '18. 7. 24. 하계 초·중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18. 8. 2. ~ 8. 3.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 '18. 8. 7.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18. 8. 7. 제5회 고교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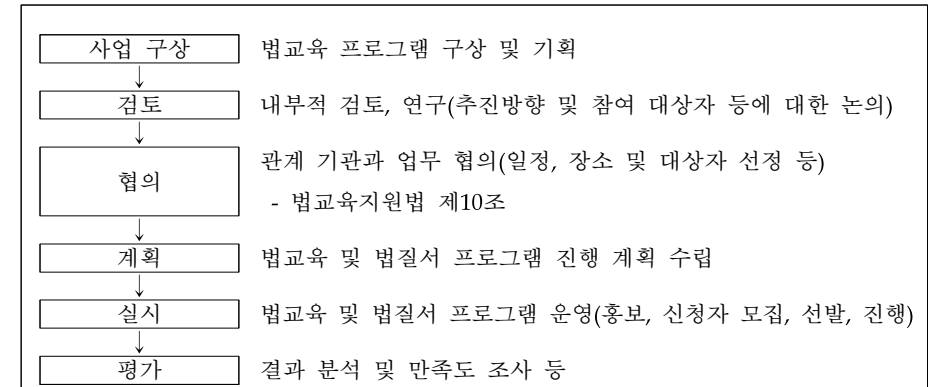
- '18. 8. 9. ~ 8. 10.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생활법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 '18. 11. 광주 솔로몬로파크 설계용역 계약 체결
- '19. 3. 27.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 464개교 모집
- '19. 4. 16. ~ 4. 26. 학생자치법교육 권역별 워크숍 5회 개최
- '19. 6. 7. 법체험 캠프 모집
- '19. 6. 7. 생활법 토론 및 생활법동아리 캠프 모집
- '19. 6. 3. 어린이로스쿨 운영 개시, 70개 기관
- '19. 5. 10. ~7. 11. 책으로 배우는 인성 운영
- '19. 3. 6. 모두가 행복한 교실 운영학교 모집
- '19. 6. ~ 12.. 대전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체험전시물 개선공사
- '19. 9. 광주 솔로몬로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법체험 캠프 프로그램 개최
 - 생활법 토론 및 동아리 캠프 개최
 - 시민·어린이로스쿨, 법률콘서트 등 생활법 프로그램 운영
 - 학생자치법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실 등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학생, 시민 등 다양한 대상의 법교육 강연 프로그램 운영
 -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법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등 개발·보급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 법질서 실천운동(민관공동 법질수 준수 캠페인)
 - 솔로몬로파크 2개 기관(대전, 부산)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5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0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0			0		정액보조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3,993	4,192	4,192	4,675	4,675	483	11.5

4. 사업목적

- 법무연수원 교육생 식당 직영 운영과 사무보조, 청소, 경비 및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생 만족도와 교육효과 극대화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추진경위
 - '99. 7월 : 정부 구조 조정 시 시설관리 및 급식 등 민간위탁
 - '01. : 급식관리 직영 전환
 - '15. 3월 : 충북 혁신도시 기관 이전, 용인·진천 이원화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사업규모
 - 교육생 급식관리 식당조리원 25명, 연간급식인원 238,719명(1일 평균 654명)
 - 부지 847,997㎡(256,519평), 건물 91,882㎡(27,794평, 32개동)
 -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용 원아 : 3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 검찰 · 유관기관 공무원, 법무연수원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꿈나래어린이집	정액보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37조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연수원 예산 수요과약(전년도) → 예산확보 및 편성(전년도) → 예산집행(당해연도) → 결산(차년도)

사업명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392	1,422	1,422	1,445	1,445	23	1.6

4. 사업목적

-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인재 양성
- 직무 전문교육과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관·공직관 및 인권·양성평등·청렴 등 소양 교육 확대 실시

- 검사 고위 및 중견관리자 과정, 검찰·보호·출입·교정 중간관리자 과정 등 법무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 신규 공무원에게는 기본소양 및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함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2007년 상시학습제도 도입, 2008년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2009년 식품·환경·소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과정 및 2011년 국가승무 수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운영
 - 2013년 행정안전부의 9급 신규자 공채 시험방식 변경, 하위직 신규자 기본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 확대 개편 추진
 - 2018년 직무교육 체계를 개편,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교육은 목표중심 단기교육(타겟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효과 제고
 - 2019년 사시출신 신입검사 교육 예산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2013 ~ 계속(법무핵심리더 양성교육)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검찰, 유관기관 공무원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사 업 명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51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460	460	460	159	159	△301	△65.4

4. 사업목적

- 양질의 급식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법무·검찰 공무원 외 교육생 만족도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 교육생에게 식비, 생활관 사용료(공공요금) 등으로 교육기간 및 숙박여부에 따라 징수된 교육비를 국고로 납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수입대체경비에서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 공무원 외 교육생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수요과목 및 예산편성 ⇒ 교육신청시 교육비 등 징수 및 국고납입 ⇒ 교육실시 ⇒ 교육비용 지출

사 업 명
신입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513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2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신입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신입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940	894	894	890	890	△4	△0.4

※ 2019년도 예산안부터 사업명칭 변경

(‘18년) 로스쿨출신 신입검사교육 및 로스쿨 지원 → (‘19년) 신입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4. 사업목적

-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임관된 신입검사에 대한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강의 등 지원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2.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신입검사 42명 임용(2013년 37명, 2014년 35명, 2015년 45명, 2016년 49명, 2017년 50명, 2018년 112명, 2019년 118명, 2020년 132명), 법무연수원에서 1년 과정으로
 -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국가적 과제로서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 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
 - ‘16년 과목구조 개편으로 로스쿨지원 및 국제협력(5131-308), 로스쿨출신 신입검사 교육(5131-312) 2개 사업을 로스쿨출신 신입검사교육 및 로스쿨지원(5131-312) 사업으로 통합
 - ‘18년부터 사시출신 신입검사 교육체계가 개편되어 당초 상·하반기 총 2개월(전반기 5주+후반기 3주) 진행하던 교육이 변호사시험 출신 신입검사 교육 중 전반기 5개월간 통합교육 실시로 개편되어, 2018년부터 신입검사 통합교육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 ~ 계속(로스쿨 지원 및 국제협력)
2012 ~ 계속(로스쿨 출신 신입검사 교육)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신입검사 및 로스쿨 재학생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사 업 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행정효율성증진및 능력개발	586	613	613	613	613	-	-

4. 사업목적

-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 실현
 -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추진
 -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학습 프로그램 운영
 - 소통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05년~계속, 정부부처 공통 사업(주관 : 행정자치부)
-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 공통조직인 혁신(인사)기획관실 신설, 운영
 -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인사위원회, '04.10.22.)
 - 「2015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 및 생활불편 개선 추진계획 통보」(행정자치부, '15.3.1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및 대검찰청
- 사업 수혜자 :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 변화관리 교육
 - 수요조사 실시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별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 교육업체 선정 및 계약 → 교육 실시
- 제도개선 추진
 - 기본계획 수립 → 과제 발굴(수시) → 우수제안 포상 → 이행상황 점검

사업명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7032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1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11	120	120	120	120	-	-

4. 사업목적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역량 강화 및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발굴·개선 등 고객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추진경위
 - 2013. 3. 대통령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시 말씀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 달라. 한 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 해결 효과가 나타남”
 - 2013.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국무총리 승인, 안행부 시행)
 - 2013. 6.~10. 「법무부 국민행복 민원 피드백 강화 추진단」 구성·운영
 - 2013. 6.~10.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피드백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
 - 2013. 12.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출범
 - 2020. 3.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행안부 매년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사업규모 : 일반 국민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민원 친절도 점검 등
 - 사업계획수립 → 계약체결 → 사업추진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민원현장점검 및 민원행정서비스 선진사례 자료 수집 등
 - 사업계획수립 → 민원현장점검 및 선진사례 자료수집 → 결과분석
- 기타 민원서류 접수·처리 등

사 업 명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행정서비스지원 인력경비	5,435	7,309	7,309	9,648	8,741	1,432	19.6

4. 사업목적

-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등 법무부 각급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지무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② 추진경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21년 사회복지무원 규모 991명 (※ '20년 90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양성평등정책 지원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양성평등정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금액 (B-A)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양성평등정책지원	100	189	189	253	253	64	64

4. 사업목적

- 법무·검찰 조직 내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별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 정립
-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검찰 조직문화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양성평등 기본이념),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도부터 '양성평등교육' 예산 확보하여 교육 실시
-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인식전환 교육 필요
 - ※ 법무경찰의 성인지 교육 필요성 지적 등(2009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시)
- 성인지감수성 제고, 소통강화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도모
 - ※ 경직된 조직문화와 소통부재가 법무경찰 조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법률신문 '12. 4. 3.)
- 법무경찰의 여성검사·공무원 증가에 따른 조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문화 정립 필요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도 ~ 계속
- 사업규모 : 사업시작 후 검사, 법무·검찰공무원 등 매년 평균 3,500여명 교육 실시 (최근 3년 평균 6,000여명 교육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사업(R&D)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3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개발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정책연구개발사업 (R&D)	42	48	48	48	48	-	-

4. 사업목적

- 법무행정 수행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 개발
- 정책현안 연관성, 자체 연구용역비 활용가능성 등 평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1999년 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에 의거, 법무부 산하단체인 형사정책연구원이 국무조정실로 이관됨에 딸 행정원 연구개발비 예산 중 일부를 매년 법무부 연구개발비로 계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계속
- 사업규모 : 법무·검찰 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정보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30,521	38,859	38,859	36,099	36,099	△2,760	△7.1

4. 사업목적

-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법무부의 비전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한 법무행정 구현
-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내부행정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및 국민의 편의성 제고
-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
- 법무부 주요 정보시스템(법무행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교정 등) 구축 및 운영·유지 관리
- 법무부 및 201개 소속기관 정보통신망, 전산장비 운영·유지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 「출입국관리법」, 「보호관찰법」, 「보호소년법」, 「형집행법」 등

□ 추진경위

- 1981. ~ : 각 실·국별로 독자적인 전산화 추진
<출입국(‘81), 교정(‘88), 보호(‘91), 본부(‘95)>
- 2000. 3월 : 정보화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정보화담당관 신설
- 2000. 12월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 1단계 :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2001년)
 - 2단계 : 지식정보화 토대 구축(2002년)
 - 3단계 : 지식기반 활용 정착(2003년)
- 2001. 12월 : 법무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 2003. 8월 : 법무정보화 로드맵 2007 수립
 - 정부의 정보화추진기본계획(IT-KOREA)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을 로드맵 2007로 확대
- 2008. 5월 : 차세대 법무정보화 5개년(2008~2012) 계획 수립
 - 정보인프라확충, 대국민서비스개선, 정보보호체계확립 등 200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013. 12월 :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5개년 계획, 2014~2018)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디지털 법무 3.0), 법무정보개방, 빅데이터·신기술 등 5대 전략분야, 68개 정보화 과제 마련
- 2020. 9월 : 법무부 전자정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법무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구현), 3대 추진전략 총 34개 과제 발굴·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법무부 및 201개 소속기관(법무연수원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범죄예방 95, 교정 57, 출입국 46) 정보화업무 지원
 - 법무부 21,215명(본부 725명, 소속기관 21,463명) 전산장비 지원
 - 대민서비스(보호관찰 18만명, 교정 5만명, 출입국자 9,300만명, 체류외국인 250만명) 이용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체류외국인, 출입국자, 법무부 및 201개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공고 및 입찰 → 기술평가 및 협상 → 조달계약체결 (조달청) → 사업추진 → 감리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사 업 명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대변인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0
명칭	법무및검찰 행정지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1,005	844	844	851	821	△23	△2.7

4. 사업목적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무정책을 정책 수혜자와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 다수가 접근하기 쉽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법무정책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2

② 추진경위

- 법무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9988 법률지원단 등 각종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시행과 내용을 알리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10년부터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들이 접하기 쉽고 알기 쉬운 홍보매체를 통해 법무부 시행 각종 서민지원 정책의 시행사실과 내용을 알려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서민 등 사회적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정보화)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0
명칭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형사사법공동 시스템운영	10,024	9,238	9,238	8,308	8,308	△930	△10.1

4. 사업목적

-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 공통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 사건관계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의 실시간 진행정보,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등 민원 서비스, SMS 등 통지서비스 등 온라인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
- 운영환경
 - 서비스 환경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 서비스 대상 기관 및 사용자
 - 형사사법기관 : 약 19만명 이상
- 경찰,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
- 일반 국민 : 사건관계인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제3조제1항의 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을 통지받을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말한다)을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려면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철회를 접수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제3항의 철회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 피의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전자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 2010년 7월 개통

- ‘04년부터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09. 10. 시스템 구축 완료
- ‘10. 05. 형사사법기관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 경찰,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주요 형사사법기관 대상
 - 사건관계인 대상(피의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 기존 종이중심의 업무환경을 전자화를 통하여 신속·투명한 형사사법서비스 환경으로 개선
 - 기존의 비효율적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단순 약식사건의 경우도 사건접수부터 선고까지 약 47일 소요되던 것을 약 32일로 대폭 단축
- 형사사법 비용절감 효과 발생
 - 전자적 업무처리에 따른 단위 업무시간 단축, 종이절감·우편송달 및 벌과금 집행 관련 사회비용 절감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119억원 (2005~2020년)
- 사업기간 : 2005~2009년, 계속(2010이후 운영)
- 사업규모 : ‘21년 83억원(‘20년까지 기투자액 : 1027억원)
 - ※ ‘05 - ‘09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구축(269억원)
 - ※ ‘10 - ‘20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등)(850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 관련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7038-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1
명칭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	-	19,659	-	19,659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기반을 구축하여 수사·기소·재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 증대 및 사건 관계인의 형사절차 권리 강화를 포함한 국민편의 증진
- (사업내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확대, 대국민서비스 전면개편, 빅데이터/AI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구축,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 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	관련 조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제6조(전자화문서의 작성)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중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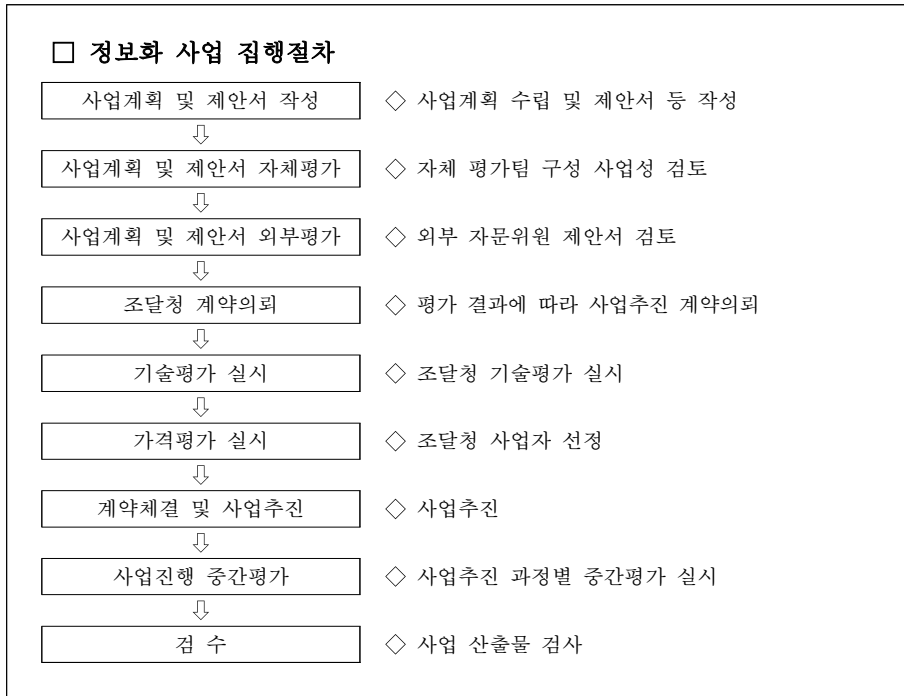
-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무부 4개 기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추진 합의('18. 4.)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수행('18. 5. ~ 12.)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19. 1. ~ '20. 7.)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법제 정비를 위한 TF 운영('20. 3.~)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20. 8.)
- 법무부 산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TF' 설립('20. 8.)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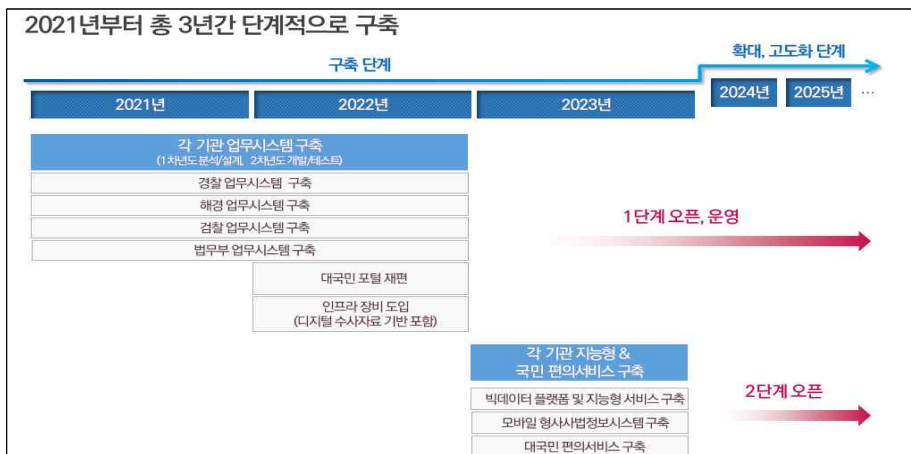
- 총사업비 : 3,526억원(예비타당성 결과 기준)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사업규모 : 2020. 12월말 현재, 내부사용자 약 198,000명
 - ※ 경찰 KICS 132,497명, 검찰 KICS(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23,952명, 법무부 KICS 26,416명, 법원 KICS(판사 및 실무관) 15,000명 등
 - ※ 대국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접속건수 : 295,571,581(일평균 80,674건), 방문자수 : 27,629,288(일평균 13,194명), 사건조회 : 75,843,324(일평균 20,693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공동 추진)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 관련기관,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사 업 명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A)		2021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6,478	8,302	8,302	11,902	12,869	4,567	55.0

4. 사업목적

- 동 내역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수용시설 환경 개선으로 대국민 법무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 일반회계였던 법무시설조성사업(1700) 예산이 '신·증축사업'은 국유재산관리 기금으로,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편성됨
- 2013년부터 개보수 및 확충사업(1733-443)으로 통합·편성하여 사업추진
- 2017년부터 '본부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본 사업에 통합·편성
- 2019년부터 사업코드 7039-300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3 ~ 계속
- 사업규모 : 법무부 본부 및 268개 소속기관(검찰청,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 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 발주/계약 → 설계/공사 → 완료

구 분	1년				2년				3년				비 고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설 계	계획/계약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도서 납품									평균 240일 이상
공 사					조달요청 계약	철거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입주				평균 1년 이상
감 리					조달요청 계약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비례

* 통상적인 리모델링 및 소규모 증축공사 소요 기간임

II. 교도작업특별회계

1. 세 입

사 업 명
교도소 수입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교도소 수입	63,012	74,809	74,809	89,383	89,383	14,574	19.5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 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수납액	62,381	66,483	65,847	63,012

사 업 명
기타 잡수입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 잡수입	160	358	358	359	359	1	0.3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 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나. 세입 개요

- 작업부산물, 불용품 매각,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수납액	157	243	168	160

사 업 명
전년도 이월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전년도 이월금	8,011	9,849	9,849	9,849	9,849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잉여금의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나. 세입 개요

- 전년도 세계잉여금(전년도 총세입액 - 전년도 총세출액)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수납액	31,968	18,218	7,268	13,884

사 업 명
예탁원금회수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예탁원금회수	42,000	40,000	40,000	37,000	37,000	△3,000	△7.5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7조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단기 예탁 후 원금회수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수납액	9,770	12,000	43,642	42,000

사 업 명
기금예탁이자수입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904	2,161	2,161	1,781	1,781	△380	△17.6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7조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6	2017	2018	2019
수납액	186	622	1,308	904

2. 세 출

사 업 명						
교도작업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교도작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A)		2021년(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교도작업	52,059	54,931	54,931	56,111	56,111	1,180	2.1

4. 사업목적

-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 작업장려금 지급 등 일련의 작업운영 지원
-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76조,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형집행법

제65조(작업의 부과)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외부통근 작업 등)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72조(작업의 면제)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제73조(작업수입 등)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위로금·조위금)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때

2.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7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시작
- 전국 교정시설내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작업재료 구입,

작업직종 개발, 경제적 자립기반 자금인 작업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행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22천명의 수행자가 교도작업 참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행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수주활동 →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접수 → 원가계산 → 작업명령 → 소요재료 불출 → 제품생산 → 제품운송 → 납품/작업장려금 계산고 지급 → 고지서 발부 → 징수

사 업 명

직업훈련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1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직업훈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 총괄표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A)		2021년(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직업훈련	5,617	5,426	5,426	4,045	4,045	△1,381	△25.5

(단위: 백만원, %)

4. 사업목적

- 수행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
- 수행자 출소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률 제27조

○ 형집행법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행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행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

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69년부터 전국 교도소에 노동부 인가 공공직업훈련교도소를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
- 추진배경 :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및 출소 후 재범방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34개 교정시설에서 17개 분야 210개 과정 6,058명 직업훈련 참여, 여성 및 장애인 특성화 전문직업훈련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직종, 인원 등 계획수립→ 법무부장관 승인→ 직업훈련 시설·장비확보→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실시 → 기술자격 검정응시 → 직업훈련 수료

사 업 명						
시설보완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시설보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A)		2021년(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시설보완	10,005	9,619	9,619	8,908	8,909	△710	△7.4

4. 사업목적

- 작업장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생산성 제고능력 배양
-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설, 개량,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도작업의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내지 제76조
- ② 추진경위
 -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수익금으로 작업시설 신·증축, 작업환경 개선, 최신 장비 설치 등 교도작업 발전기반 조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22천명의 수행자가 참여하는 교도작업 작업장의 신축·개축, 노후작업장 환경개선 및 최신 생산장비 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 실시기관 시설보완 청구 → 예산재배정 → 집행 → 노후장비 교체, 신규설비 투자 등의 순환과정

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특별회계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8910	89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A)		2021년(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2,000	56,633	56,633	68,739	68,739	12,106	21.4

4. 사업목적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교도작업 운영자금 기간별 소요일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7조
-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특별회계 여유 운영자금 활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효율적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국고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제출요청 → 법무부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수립 제출 → 한국은행에 교특회계 여유자금 공자기금으로 예탁

Ⅲ.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수 입

기타 재산수입
54-545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기타 재산수입	496	426	426	426	426	-	-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2. 수입 개요

-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686	520	232	496

변 상 금
57-57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B-A)/A
변상금	1,243	1,556	1,556	1,556	1,556	-	-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2. 수입 개요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재산 등 강제환수 추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014	1,198	1,510	1,243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785	1,949	1,949	1,949	1,949	-	-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725	2,004	1,431	1,785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82,440	82,440	82,440	82,440	106,054	23,614	28.6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2. 수입 개요

- 해당연도 예상 벌금수납액의 8%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산출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94,856	80,110	80,110	82,440

2. 지 출

사 업 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0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10~15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8,859	23,376	23,376	18,013	18,013	△5,363	△22.9

4. 사업목적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타(법률구조안내, 현장정리,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돕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범죄의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 국가 위탁운영기관인 스마일센터 통해 강력범죄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제34조(보조금의 교부)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의 교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06. 11.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60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법무부에 등록하여 활동중임
 - ※ 2008. 9.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전국적인 홍보 및 지원 등의 수행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업무를 담당

<스마일센터>

- 2009년 연구용역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장애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질환자집단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확인
 - * 강력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 박형민)
- 이에 따라, '10. 7.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스마일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16개소 설치됨

<치료비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 공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
- 그러나 지금까지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에만 관련 법령에 의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금 외에 국가적 지원은 전무
- 이에 따라 '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립을 계기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추진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주요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를 지원하여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도모 ('16년부터 경찰청에서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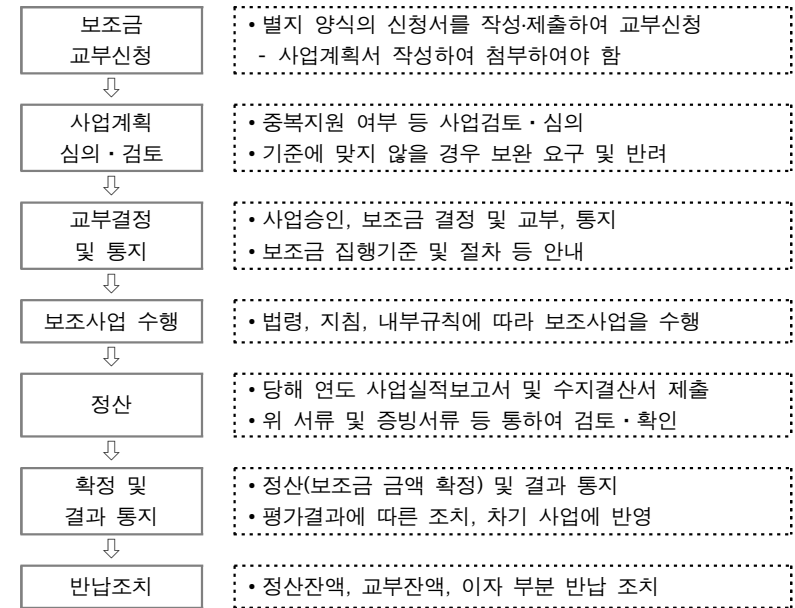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60개 전국 피해자지원센터 및 16개 스마일센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검찰청,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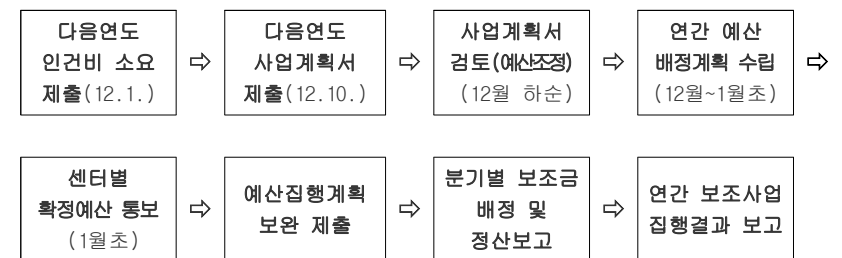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약 10~1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스마일센터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34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약 50% (신체상해 피해자의 변호사보수 지원)	법률구조법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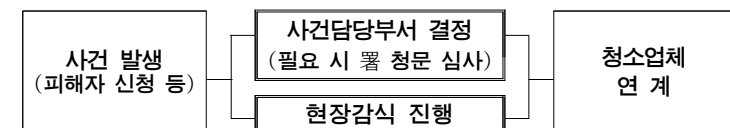
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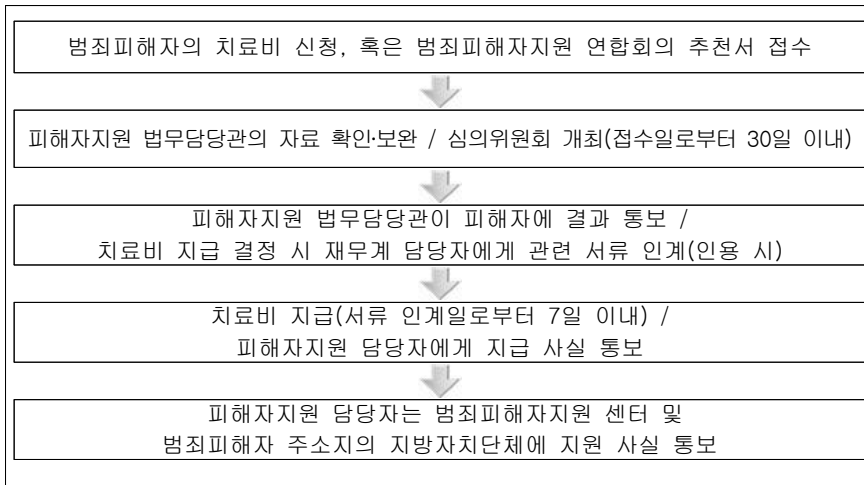
나. 스마일센터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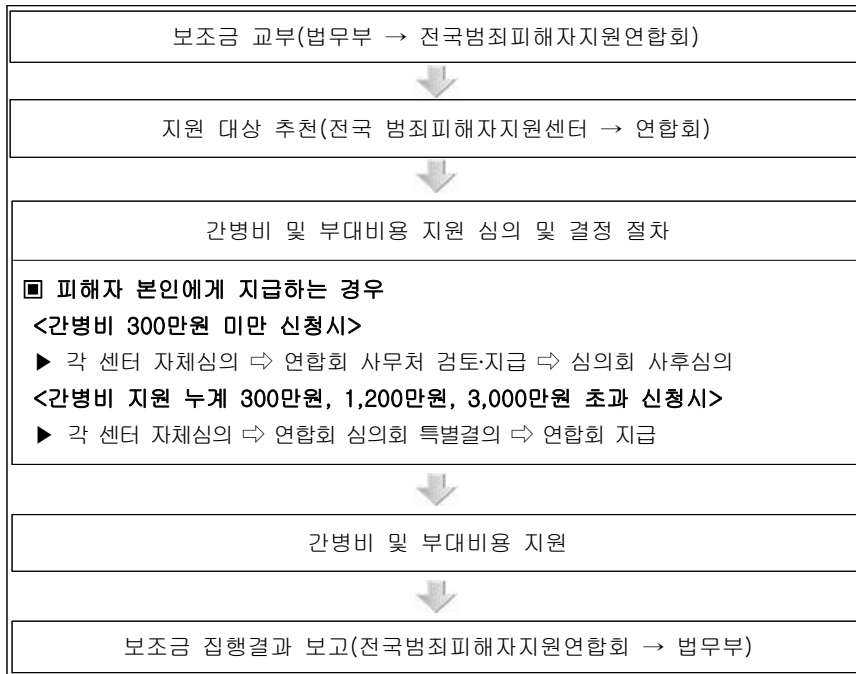
다.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라.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검찰청)



마. 범죄피해자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사 업 명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11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1
명칭	인권활동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4,530	4,499	4,284	5,132	5,122	838	19.6

4. 사업목적

- 검찰청내에 지역사회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및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피의자간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사적영역에서의 분쟁해결능력을 증대하고, 형사사법의 비용을 절감하며,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종국적이며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 ~ 46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4. 8. 26.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안’ 의결
 - 2006. 4. 20. 대검찰청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마련
 - 2007. 1. 1. 형사조정제도 전국청 자율적 확대 지시, 같은 해 8. 전국청 시행
 - 20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 근거규정 신설
 - 2017. 4. ‘형사조정 조기 활용 확대 방안’ 시행 : 검찰 직수 고소사건 및 경찰 접수 고소사건 등에 대해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조정 제도 활용
 - 2017. 4. ‘제10회 IA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조정 제도 소개하며 롤모델로 전파
 - 2017. 6.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전문화를 위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개정
 - 2017. 12. 관련 법률·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위한 실무 사례 등을 추가한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및 2018. 11. 증보판 발간
 - 2018. 11. 5개 고검 권역별로 형사조정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및 전문분야 교육 실시 (543명)
 - 2019. 02. ‘한국 형사조정 표준안’이 전 세계 검찰협력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의 표준모델로 채택
 - 2020. 03.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KICS 피해자지원시스템 상 형사조정 관련 정보의 전산화 (형사조정위원, 조정 횟수 등 관련 자료 입력, 수당 자동 계산 등 기능 개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고소사건 분쟁당사자, 범죄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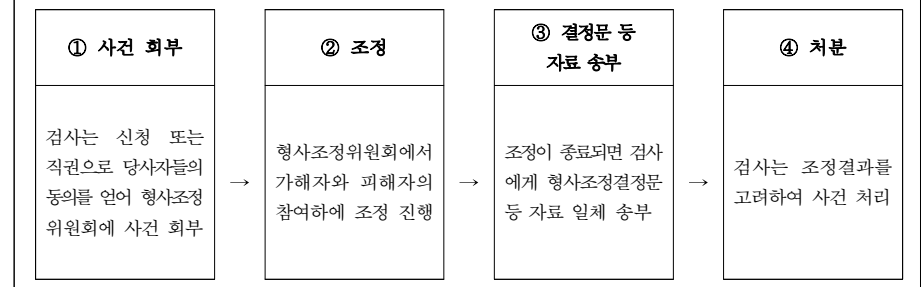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 ~ 46조

※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대검예규 제493호, 2009. 10. 29.) 제정하여, 그동안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해온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2009. 11. 10.부터 검찰청으로 이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이 위원장 및 위원 등 위촉

○ 집행절차



사 업 명
범죄피해구조금(113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2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구조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범죄피해구조금	11,650	10,708	10,708	12,130	11,650	942	8.8

4. 사업목적

-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

※ 범죄피해구조금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7조, 제16조 ~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 제40조

② 추진경위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05. 12. 29.)
·구조요건 완화→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 삭제
-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 법률안 국회제출('08.11.28.)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 법률을 「범죄피해자보호법」 하나의 법률로 통합
- 범죄피해자구조금 업무 검찰국 → 인권국 이관('09. 1.)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09. 4. 20.)
·유족구조금 :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상향
·장해구조금 : 300~600만원 ⇒ 600~3,000만원 상향
·장해구조대상 확대 1~3급 ⇒ 1~6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10. 5. 14.)
·유족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5,400만원
·장해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4,500만원
·장해구조 대상 확대 1~6급 ⇒ 1~10급
·가해자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중상해구조금 신설, 신청기간 연장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2. 6. 29.)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중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수 1/6을 곱하여 구조금 산정
⇒ 위 사람들 중 피해자의 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3/6으로 배수 상향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0. 15.)
·친족간 범죄에도 구조금 '전부' 지급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2. 15.)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 33% 증가)
- 범죄피해자 권리 의무고지제도 시행('15. 4.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17. 12. 19.)
·장해등급을 '1~10급 → 1~14급'으로 확대
·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을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 → 3일 이상 입원치료'로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지방검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신청→
→ 심의회 심의 → 구조금 지급
→ 기각
→ 기각 → 재심신청 →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구조금 심의 후,
지급·기각 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24조~제27조

사 업 명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6
명칭	인권활동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041	1,112	1,112	1,712	1,417	305	27.4

4. 사업목적

- 성폭력범죄, 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험이 발생
하는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작동시켜 보복범죄 피해를 줄이는 신변보호강화 조치
- 보복범죄를 피하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이전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 2011. 5. 30.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2012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및 확정
 - 2012. 4. 16.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지침 제정, 시행
- 임시숙소 지원
 - '13년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강력범죄 피해자 등 대상 임시숙소 숙박비 요구, 예산 확정되어 '14년부터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검찰청,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강력범죄 피해자 등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범죄피해자나 신 고자, 증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위치확인장치
 - (검찰)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회망의사 확인 ⇨ 회망시 피해자지원담당관실로 안내(관련서류 인계) ⇨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에게 신청서 접수 및 담당검사 결재(전결) 받아 비상호출기 지급, 사용방법 설명
 - (경찰) 기기 지급 → 112시스템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긴급상황 시 보호 요청(기기 작동) → 상황실 접수 → 지령 및 실시간 위치확인 → 경찰 출동 → 안전 확보
- 이전비
 -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다른 곳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단계	• 당해 사건을 수사중 또는 기소한 각 청 피해자지원담당자 - 피해자 등으로부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청서 접수
지원단계	•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에게 신청서 인계 - 검사는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

- 임시숙소 지원
 - 범죄피해 발생 → 임시숙소 연계 → 지방청·경찰청 보고 → 숙박비·긴급부대비 지급

사 업 명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3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0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981	1,029	1,169	1,110	1,106	△63	△5.4

4. 사업목적

-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을 양성 및 배치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증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 간 의사소통을 증개·보조하는 전문인력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27호)」 등

② 추진경위

< 제도 도입 및 시행 과정 >

- 여성가족부에서는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진술조사전문가 제도를 운용
- '12년 국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위해 여성가족부의 진술조사전문가 사업은 '13년까지 유지 후 폐지, 법무부 진술조력인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여·야 합의¹⁾
- '12. 11. 22. 국회 결과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여성가족부의 진술조사전문가 제도는 '13년까지 유지 후 폐지, '14년부터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로 일원화
- '13. 12. 19.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 제도 추진 경과 >

- '1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실시
- '13. 12. 진술조력인 48명 자격부여
- '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범위를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19. 12. '현재 진술조력인 총 122명 양성, 상근 진술조력인 15명 전국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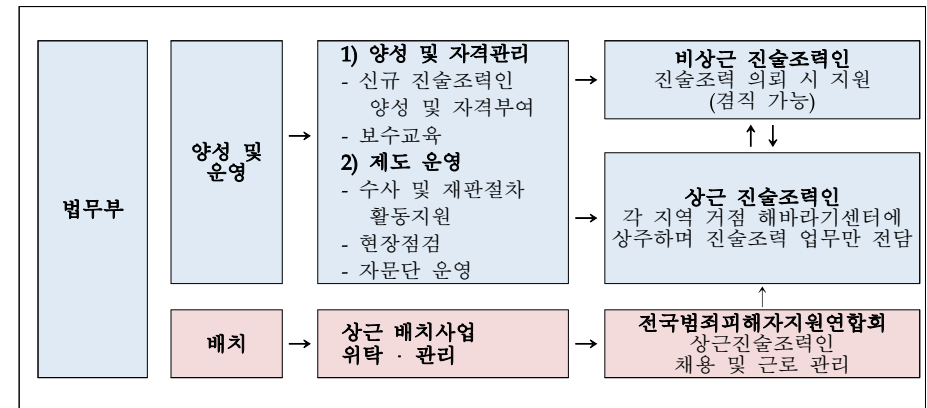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19년 2,226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양성]직접수행, [배치]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양성]법무부, [배치]법무부 →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1) '12. 11. 22. 국회본회의 회의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표결 전에 이러한 내용의 발언 기록

사 업 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권익증진국 (여성가족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 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성폭력 피해자 지원	31,213	31,382	31,382	32,448	32,366	984	3.1

4. 사업목적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95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신규 지원('20.1월 현재 104개소)
 - '9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지원('20.1월 현재 32개소)

- '0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지원
 -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대책, 2002년』의 일환
- '04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당초 복권기금)
- '08년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수립('08.4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 '09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09.10월)
- '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수립('10.6월), 친족피해자아동청소년전용쉼터 신규설치 지원 ('19.1월 현재 4개소)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 '04년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시작('19.1월 현재 7개소)
 - '05년 원스톱지원센터(위기지원형) 운영시작('19.1월 현재 16개소)
 - '10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통합형) 운영시작('19.1월 현재 16개소)
- '10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시작
- '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11.10월) 및 보완 대책('11.12월) 수립
 - ※ 법 제정에 따라 의무경비 지원 시행(시설입소자 생계비, 퇴소자자립지원금 등)
-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13.6월)
-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지원('14년)
- 3종류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15.3월)
- 4대악근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수립('16.1월)
-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18.3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사업규모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4개소), 상담소(104개소), 해바라기센터(4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7. 사업 집행절차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지자체 보조사업)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관리)
→ 상담소, 보호시설, 센터(피해자 상담 및 정산 보고 등)

-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보급

· 여성가족부(키트 제작, 배포) → 시도·시군구(키트 배부 요청) → 의료기관(키트 사용)

사 업 명
피해자 국선번호사 지원 (1136-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5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국선번호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피해자 국선번호사 지원	5,508	6,474	6,100	6,869	6,869	769	12.6

4. 사업목적

-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발생 초기 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 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
-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 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30호) 등

② 추진경위

< 제도 도입 및 시행 과정 >

- '10. 10. 국가인권위,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등 법무부 등에 권고
- '10. 12. 법무부 인권국,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도입 '11년도 대통령연두 업무보고
- '11. 1. 법률조력인 도입방안 연구 용역 의뢰 및 '11. 5. 입법공청회 개최
- '11. 7. - 8.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1. 9. 15),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지원 제도 규정
- '12. 3. 검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공포
- '12. 3.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제도 추진 경과 >

- '13. 6.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전체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확대
- '13. 7.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 '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18. 5. 만성적인 예산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가 예산 집행을 위해 국선 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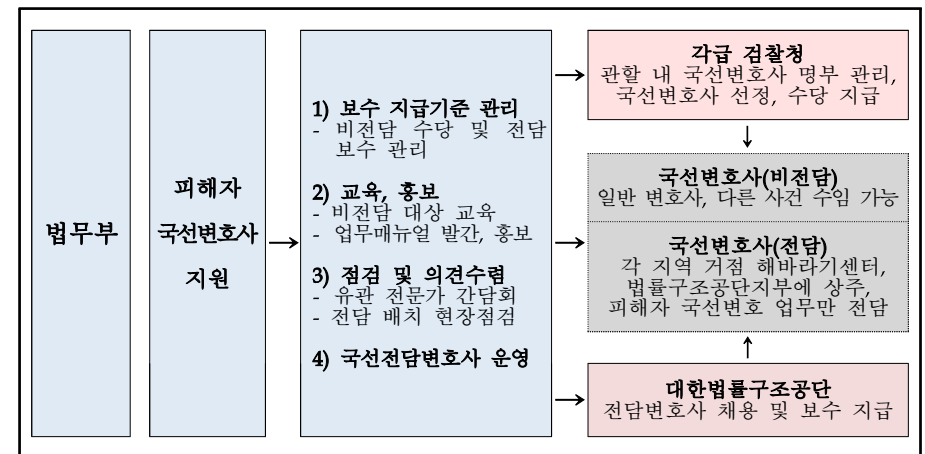
- '19. 2~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21명 배치(해바라기센터 6개소, 법률구조공단지부 15개소)
- '20. 4~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23명 배치(해바라기센터 6개소, 법률구조공단지부 17개소), 각급 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내 피해자 국선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 비전담변호사 포함)를 관리하고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명부에 등재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19. 11. 기준 23,585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전담]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비전담]법무부→각급 검찰청, [전담]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법률구조공단	100%	법률구조법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법무부	인구정책실 (보건복지부)		020	022
명칭	보호기금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00
명칭	인권활동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B-A)/A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2,500	22,578	24,808	31,884	28,736	3,928	15.8

4. 사업목적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설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동법 제59조(비용보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제1항 제4호

② 추진경위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2000. 1. 아동복지법 개정)
- '00. 아동학대예방센터 17개소 설치
- '01. 10.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운영
- '06. 6.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 * '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사용하였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
- '13. 2. 국민 안전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
 - * (국정과제 80-1) 아동인권 및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동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 '13. 12.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14.1.28 공포, '14.9.29 시행
- '15. 1월 전국 52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7. 7월 현재 전국 61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7. 7월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
 - * (국정과제 48)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 '17. 12월 전국 61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8. 3개소 신규설치(서울 노원, 세종, 경기 광명), 전국 63개소(중앙포함) 운영
- '18. 12월 현재 전국 63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9. 7월 현재 전국 65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9. 12월 현재 전국 67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종료(2019.12.31.) 및 아동권리보장원 설립(2019.7.1.)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및 관리, 직무교육, 정책연구 등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종료(2019.12.31.) 및 해당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6호)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입양원 등 8개 위탁사업을 통합
- '20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
- '20. 1월 전국 68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위탁기관변경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수행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시행 2020.1.1.)
-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발표(7.29, 사회관계장관회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100%), 지자체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만18세미만의 학대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사회보장정보원	100%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6항

7. 사업 집행절차

